

자본시장이 크게 발전하려면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자본시장은 기업이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이다. 자본시장이 발전할 경우 기업은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이자비용을 줄이면서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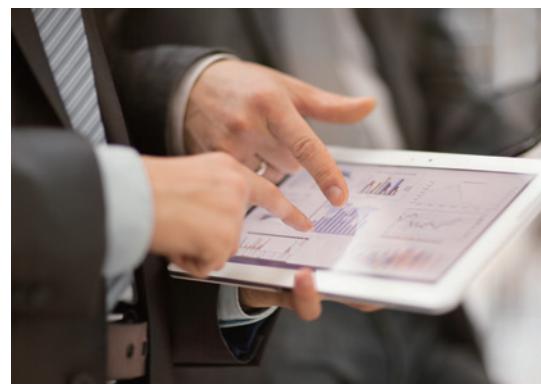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본시장은 주식과 채권,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특히, 지금 리, 부동산가격 안정,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투자처로서 자본시장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발전은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여력을 증진시켜 실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다. 실물경제가 잘 돌아 가야만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주가도 올라 자본시장 또한 발전할 수 있다. 반대로 실물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자본시장도 발전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침체는 또다시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실물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이 약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고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경제를 확대 균형 쪽으로 이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지금처럼 실물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나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회복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 실물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은행들은 여신을 회수하고 신규 자금공급을 꺼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모험자본의 육성, 사모펀드 규제완화, 코넥스와 같은 신 시장 활성화 등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하려는 것도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급하고도 적절한 정책들이다.





지금처럼 실물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나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회복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보다 탄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 플레이어, 인프라, 투자문화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

첫째, 투자수요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자본시장으로 보다 많은 투자자금이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외국인 투자 비중을 낮추어야만 보다 안정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과 은행 예금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가계의 자산이 펀드나 신탁 등 간접투자를 통해 자본시장 쪽으로 더 많이 옮겨 오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자본시장 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 가계의 노후대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 종전과 같이 저금리 예금과 부동산에만 투자해서는 은퇴 후 30년 이상의 장기간을 풍요롭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우량 주식을 포함한 투자상품의 공급이 확

충되어야 한다. 이는 유망한 기업들의 상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이다. 우량하고 유망한 기업들이 상장에 따른 혜택보다는 규제와 부담 때문에 상장을 기피하고 비상장 상태로 머무는 것을 선호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어렵다. 상장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꿈이자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개발하여 투자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셋째,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사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역량이 제고되어야 한다. 위탁매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영세한 규모의 금융투자회사나 단기적 시각의 자산운용과 짜투리 펀드를 양산하는 자산운용회사, 몇 사람의 직관에 의존하는 투자자문사만으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명실상부하게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세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보다 탄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 플레이어, 인프라, 투자문화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

유수의 펀드운용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실력을 갖춘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사가 출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넷째,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분식회계와 같은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 자세부터 변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실적과 전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중립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중요하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소시스템, 예탁결제시스템, 자율규제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쌓일 것이고, 신뢰가 뒷받침되어야만 자본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 올 수 있다.

다섯째,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은 은행 예·적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만큼 손실 가능성도 크다는 점과 투자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투자자 자신이 져야 한다는 원칙이 사회적 공감대로 정립돼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본원칙 조차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원칙이 확고히 정립되어야만 자본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가 줄어들어야만 우량기업의 상장이나 플레이어들의 활발한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이 가능해지고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자산운용 등의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보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플레이어들의 경영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들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때, 우리나라로 비로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 맞는 선진 자본시장을 갖게 될 것이다. ☞

상장회사관련 상법 회계제도와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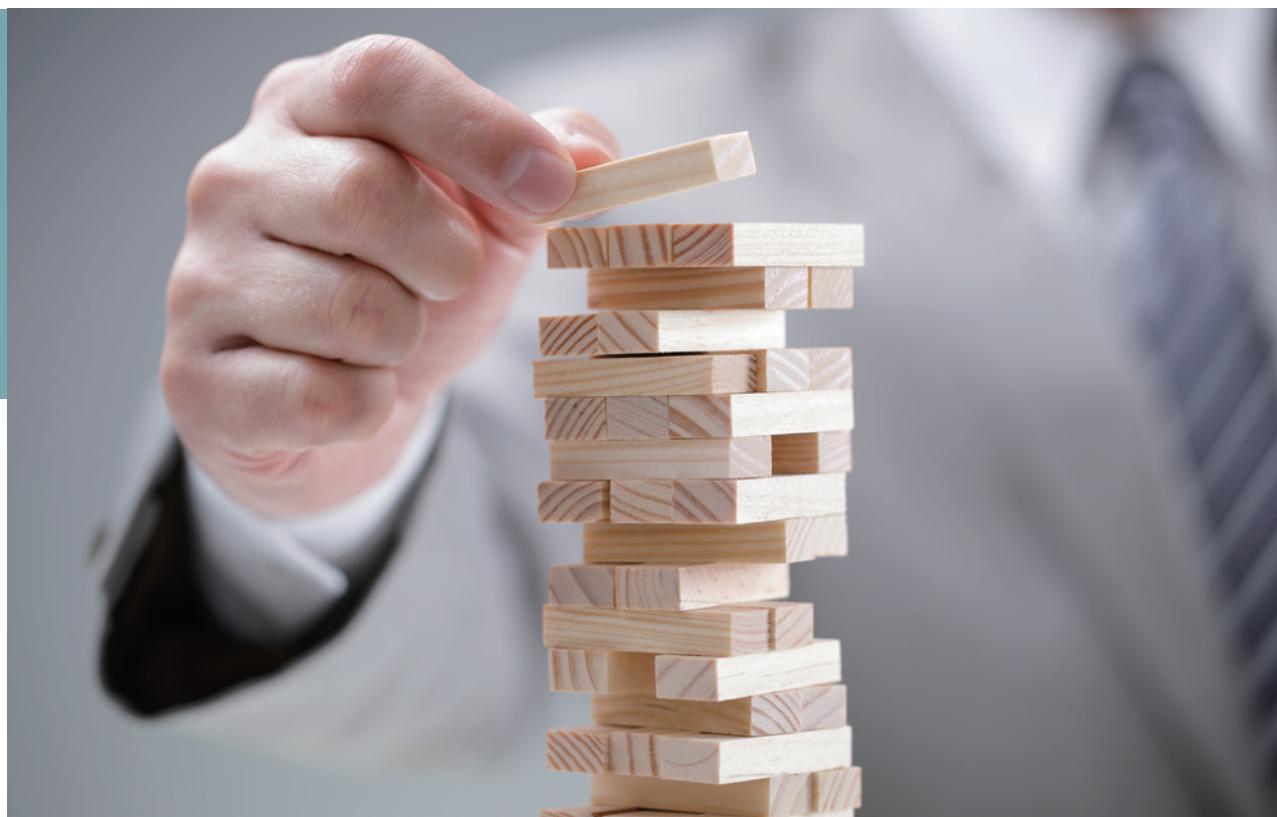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FRS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파는 자본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투자대상 기업에 관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다양한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으로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들 수 있다. 재무제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각국별로 공적인 기구가 작성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국경이 없어지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도 글로벌화 됨에 따라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국제적으로 단일·통합된 회계처리기준의 등장이 기대되어왔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출현한 것이 바로 국제회계기준(IFRS)이다. IFRS는 회계에 관한 세계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이념으로 1973년 런던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 국제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각국 회계기준을 검토한 끝에 제정한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은 금융위원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채택한 것으로서 결국 IFRS를 우리말로 옮긴 이른바 한국판 IFRS라고 할 수 있다. K-IFRS는 IFRS를 전폭적으로 일시(一時)에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회계기준의 빅뱅(Big Bang)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K-IFRS는 원칙중심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즉, K-IFRS는 각종 회계처리에 관련된 나열식 규칙이나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규정의 자구해석에 치중하는 경우 규제회피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IFRS를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의 제고와 그로 인한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의 개선 및 글로벌한 범주에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이중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1984년 개정상법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래 상법개정이 있을 때마다 회계처리의 원칙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마침내 1984년 개정상법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현행 상법 총칙편의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상인에 대하여 적용된다(상법 제29조). 이 경우 상업장부라 함은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말

하며(상법 제29조 제1항), 이러한 상업장부의 작성에는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상법 제29조 제2항). 1984년 개정상법이 제29조 제2항을 신설한 취지는 단순히 상업장부의 작성준칙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 요컨대, 상법 제29조 제2항의 본래 입법취지는 상법상의 모든 회계의 준칙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기능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상법 제29조 제2항의 신설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1984년 개정상법에서 제29조 제2항을 신설한 세부적인 이유로는 다음의 것들이 알려져 있다. 첫째, 회계관련 사항을 상법에 모두 규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므로 중요한 사항만을 상법에 규정하고, 그 이외는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상법상의 회계와의 기업회계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괴리를

1) 이균성, “상법개정에 대한 개별적 의견의 종합,” 한국상사법학회 ‘상법개정의 논점’(삼영사, 1981).

해소하여 양자를 가급적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1984년 상법개정 이전에도 상업장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거래계(업계)의 관행 내지 회계관습 또는 회계의 이론과 부기의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규범이 있었는데, 상법 제29조 제2항의 신설을 통해 기존에 난립하고 있던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부 고시에 의하여 제정된 재무제표규칙 등에 산재하는 회계규칙 및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기준으로 흡수통합 되어 기업회계법제를 일원화하자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²⁾

2012년 개정상법

2012년 시행된 개정상법은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46조의2). 이처럼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의 기준으로 상법 및 대통령령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제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에 현행상법에 규정된 자산의 평가방법,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차액, 건설배당이자, 연구개발비 등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들을 규정한 조문을 전면 삭제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행 상법 제29조 제2항이 상업장부의 작성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에 적용할 것을 예정하면서 제446조의2를 추가적으로 신설하였다. 법무부는 동규정의 신설취지가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지만, 이미 현행 상법 제29조 제2항만으로도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상법 제446조의2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1984년 개정상법 주식회사의 재무제표가 상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2011년 개정상법이 그 내용의 대부분이 유사한 제446조의2를 굳이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가? 상법 제446조의2의 신설이유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이 2가지의 경우이다.

우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주의적 규정 내지 확인적 규정에 지나지 않을 뿐이어서



상법 회계제도와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상법과 외감법상
재무제표의 종류를 일치시키고
감사에게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기를 연장하여야 한다.

2) 윤순모,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법적 의의—일본법제와의 비교검토—,”『상사판례연구』제13집(한국상사판례학회, 2002), 85~86면.



별도의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이 높다보니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회계의 원칙을 다시 안내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고 기타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 혹은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규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상법 제446조의2를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으로는 상법 제446조의2는 상법 제29조 제2항의 특별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정상법 제446조의2는 회계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만을 상법에 규정해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을 주시하여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29조 제2항과 다른 입법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취할 경우에는 상법 제29조 제2항은 더 이상 주식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상의 견해 중에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상법 제29조 제2항은 상법상에 존재하는 계산규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전자가 후자에 의하여 개폐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상법 제446조의2는 상법상의 회계원칙이 적용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이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상법상 K-IFRS의 수용

상법 제446조의2와 동 시행령 제15조은 주식회사를 먼저 유형화한 후에 각 회사가 따라야 할 회계원칙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법 시행령 제15조는 회사의 유형별로 적용할 회계원칙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는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며(1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원칙을 적용한다(2호)는 것이다. 그리고 예컨대,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회사 등과 같은 나머지 유형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을 적용한다(3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 시행령 제15조는 상장회사는 K-IFRS의 적용이 의무화됨을 명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기준의 법규성에 관하여 논란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법이 K-IFRS를 간접적으로 법원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IFRS에서는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다. K-IFRS에서는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 모든 공시정보를 연결실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투자회사가 대상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대상회사(종속회사)와 투자회사(지



배회사)를 단일의 경제적 동일체로 가정하고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상법은 이러한 K-IFRS의 입장을 수용하여 개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도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되었다(상법 제447조 제2항, 제44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그리고 상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외감법상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지배회사로서 K-IFRS 적용 회사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에 한정하고 있어(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결과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자의 범위를 외감법상의 작성의무자와 일치시키고 있다.

K-IFRS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라 함은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공정하게 거래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처럼 K-IFRS에서는 기업의 실질적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액으로 재무제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K-IFRS가 도입됨에 따라 유가증권과 유형·무형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의 평가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은 자산 및 부채가 처분되거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평가상 이익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K-IFRS상 공정가치의 평가이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개선방안

상법상 회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주식회사의 규모 내지 유형을 확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포함)과 비상장금융회사 등이 외감법에 따라 K-IFRS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된다(외감법 제

13조 제1항 제1호,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법은 이 사회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에 속하는 서류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로만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47조 제1항). 이 때문에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와 외감법상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서류가 동일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상법 및 외감법상 재무제표 종류 일치여부 비교

상법/ 상법 시행령	외감법	일치여부	해결방안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명칭 불일치	2009년 외감법 부칙(제8조 용어특례규정)에서 외감법상 재무상태표는 상법상 대차대조표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서 불일치 해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 계산서	명칭 불일치	2009년 외감법 부칙(제8조 용어특례규정)에서 외감법상 포괄손익계산서는 상법상 손익계산서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서 불일치 해소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일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불일치	회계기준상 주식에 기재하도록 하여 불일치 해소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일치	
주식	주식	일치	

출처: 금융감독원,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회계제도 변경 및 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보도자료’(2012년 4월 17일), 5면.

이에 상법상의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명칭과 외감법상의 그것에 가급적이면 일치시켜야 한다. 즉, 상법 제447조에서 이사가 작성해야 할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중 외감법상의 명칭인 ‘재무상태표’까지 함께 추가하여 상법 제447조 제1항 제1호를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로 교체하여야 하며, 동항 제2호의 ‘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계산서’를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상장기업이 K-IFRS에 의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그것이 동시에 상법상의 재무제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K-IFRS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식으

로 공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K-IFRS와 외감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으로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상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상법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제출시기와 감사보고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상법 제447조의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4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447조의4 제1항).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542조의12 제6항). 현실적으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각각의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한 이후 이를 집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기는 이들 재무제표가 작성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사는 사전에 외부감사인의 감사(監査)를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외감법에서는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시기를 정기주주총회회기의 4주 전으로 정하고 있다(외감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에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외감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자면 상법 제447조의4에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연결재무제표와 연결영업보고서를 감사(監事)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❸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제도 설명회

2015. 4. 21.

서울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한마음홀에서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는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해설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관련 규제 및 공시제도 해설로 진행되었다.



제182차 상장회사감사회 조찬강연

2015. 4. 23.

63컨벤션센터 시더룸에서 이경희 한의학 박사를 초청하여 「경영자유형에 따른 사상체질」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하였다. 동 강연은 사상체질 분석을 통하여 자기관리는 물론 임직원의 유형을 파악하여 유기적인 조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였다.



기업공시 개선과제를 위한 현장간담회

2015. 4. 23.

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 선욱 공정시장과장이 본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본회는 회원사의 공시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우용 전무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선출

2015. 4. 4.

성균관대에서 개최된 '2015년도 한국경제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본회 정우용 전무가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경제법학회는 1978년에 설립된 학술단체로 법학 교수, 법조인, 고위공무원 등 학계와 실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시·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회이다.

연수 행사

비전공자를 위한 재무회계 및 재무제표분석 초급과정 **2015. 4. 2 ~ 3. 총 2일, 16시간**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계정보를 자주 접하고 이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자신의 수준에 알맞은 기본적인 회계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책임자 및 실무자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기초 재무회계를 정리함과 함께 실무현장에서 꼭 필요한 재무제표분석 능력까지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제117기 주식전문연수 **2015. 4. 6 ~ 10. 총 5일, 39시간**

상장회사 주식 및 공시업무실무책임자와 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증권관계법규와 실무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아울러 참가자 상호간의 친교와 정보교환의 기회를 제공

재무제표 작성능력 향상을 위한 K-IFRS 입문과정 **2015. 4. 7 ~ 8. 총 2일, 16시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초급실무자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거래에 대해 K-IFRS에 기초한 분개방법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K-IFRS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채권관리 핵심 노하우 특별연수 **2015. 4. 9 ~ 10. 총 2일, 16시간**

기업의 채권관리업무담당 책임자 및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채권회수기법과 관련 법적 조치 방법들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관련 양식의 작성 및 해설까지 포함하여 실무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구성된 교육과정

제5회 준법지원 전문가 양성과정 **2015. 4. 13 ~ 17. 총 5일, 38시간**

상장회사 등의 준법지원 업무를 준법통제의 기준 제정, 조직 운용, 프로세스 설계, 매뉴얼 개발 및 평가 · 교육으로 나누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하여 실무적용시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준법지원 업무의 체계적 · 합리적 운영과 함께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교육과정

인건비 회계처리와 4대 보험 및 원천징수 특별연수 **2015. 4. 14. 총 1일, 7시간**

재경 · 회계 · 총무 · 인사 등 인건비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인건비와 관련한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4대 보험과 원천징수 실무상 주의해야 하는 주요 내용 및 서식 작성 등을 사례중심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육과정

회원사를 위한 맞춤형교육 서비스

회원사를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흥아해운(4.17)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맞춤형교육은 상장회사 관련 법규 및 공시 · 회계에 대한 현안을 중심으로 회원사의 필요에 맞추어 실시하는 무상 교육서비스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 **교육문의 :** 회원팀(02-2087-7181~5)



재무제표 작성능력 향상을 위한 K-IFRS 실무중심 연결재무제표 이해와 작성 특별연수

2015. 4. 15 ~ 17. 총 3일, 21시간

기업의 회계 및 재무업무책임자와 담당자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PC를 활용하여 직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주요 점검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는 교육과정



Monthly 실무상담사례 Vol. 27 (2015년 4월호)

법률 · 공시

- 총회 의안 심의시 주주의 표결방법 변경 요구와 처리
- 감사선임시 최대주주가 위임받은 의결권의 처리
- 대표이사인 이사의 연임과 대표이사의 재선정
- 정관변경시 등기해야 할 사항
- 종류주식의 등기신청방법
-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요건
- 자기주식 취득 · 처분관련 공시서식 일원화
- 주요증속회사 지분매각시 고려할 공시사항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지분 취득시 공시사항

회계 · 세무 · 재무

- 주식소각의 회계처리
- 신규건물의 건설을 위해 건물 및 토지 취득시 회계처리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대한 증권 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
- 대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등 제출 여부
- 정부보조금의 상환시 회계처리
-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과 평가주기에 따른 분류
-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상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배제
- 매도기능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 우리사주조합원이 결산일 후 퇴사한 경우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소득세 과세 여부
- 채권 등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여부

제39회 기업내부감사사 양성과정

2015. 4. 20 ~ 24. 총 5일, 37시간

내부감사 분야에 대한 이론과 법규를 비롯하여 실무 전반에 걸친 전문교육

제20회 공시전문인 인증과정

2015. 4. 22 ~ 24. 총 3일, 17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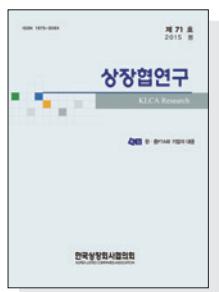
기업의 공시업무 실무책임자 및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례중심의 공시 실무를 비롯하여 공시전문인으로서 알아야 할 회계지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업무 실무 등을 중심으로 한 과정

상법(시행령)의 실무쟁점 및 관련 표준 제규정 해설 특별연수

2015. 4. 27 ~ 28. 총 2일, 1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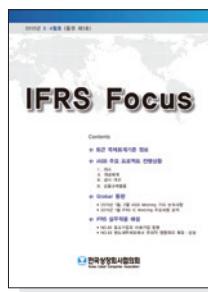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의 내용 중 특히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해설하고 '상장회사 표준정관'과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등 본회의 표준 규정과 함께 유가증권시장 공시 · 상장규정의 주요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정





상장협연구 제71호 2015 봄

- 권두논단
 - 한국의 반(反)기업정서와 기업의 책임
- 특집 : 한·중FTA와 기업의 대응
 - 중국경제와 한·중FTA
 - 한·중FTA 체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 위안화의 국제화 및 기축통화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전략
 - 중국 금융시장의 동향과 리스크
- 시사논단
 - 삼각주식교환제도의 법구조와 기업의 활용전략
 - 삼각분할합병제도의 법구조와 기업의 활용전략



IFRS Focus 2015년 3·4월호(통권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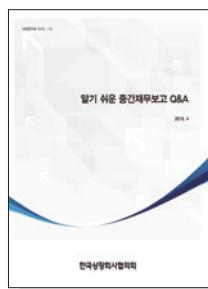
-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 Global 동향
 - 2015년 1월, 2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 2015년 1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 IFRS 실무적용 해설
 - NO.42 종속기업의 지배기업 합병
 - NO.43 별도재무제표에서 유의적 영향력의 획득 · 상실



상장협 ISSUE PAPER Vol.34

최근 증권시장의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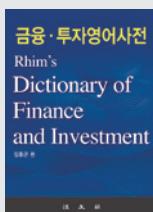
- ISSUE PAPER Vol.34에서는 액면분할, 가격제 한폭의 확대, 상장회사 배당활성화 정책효과, 기업공개(IPO) 활성화 등 증권시장 확대와 같은 최근 증권시장에서의 주요 이슈를 해설함.
- 작성자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알기 쉬운 증권재무보고 Q&A

- 상장회사의 분 · 반기재무보고와 관련한 법규, 공시 및 회계 등 주요 실무적 점검사항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

상장회사 실무담당자를 위한 신간안내



금융 · 투자영어사전

- 최신 영미 금융 · 투자 용어를 정확하게 해설하고 풍부한 활용예문으로 풀어간 영어사전
- 저자 : 임홍근 (前)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출판사 : 법문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초 이론 해설
- 저자 : 김학석 법무법인 윤촌 변호사, 김정수 법무법인 윤촌 고문
- 출판사 : 서울파이낸스앤플로그룹



상장기업의 배당확대 세제정책에 대한 개선 건의

이예지 회계제도팀 선임조사역

개요

지난해 정책당국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이하 '배당 확대 세제정책')'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미환류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상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책당국은 두 가지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배당확대를 유도하고, 이로써 가계소득의 증대 및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반 이후 정책당국의 배당확대 세제정책이 논의되면서, 증권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에 기업의 실질적인 배당확대와 관련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정책당국의 배당확대 세제정책이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배당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개선방안을 모색코자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와 함께 본회가 정책당국에 제시한 건의내용을 정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주요 내용

■ 설문의 개요

- 설문응답 : 본회 회원사 회계·세무·재무담당 실무책임자 622명(417개사)
- 설문기간 : 2015.4.7.~4.13.
- 설문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내용 : 배당확대 세제정책의 영향, 배당증대세제 적용요건의 타당성 등

■ 배당확대 세제정책의 긍정적 영향 단정 짓기 어려워

정책당국의 배당확대 세제정책이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7.50%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당수의 기업에게 금번 새로이 도입된 제도는 배당의사결정시 현재까지는 중점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기업들은 '① 당해 기업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42.94%), ② 당해 기업의 과거 배당지급 관행(27.00%), ③ 미래투자계획 등 자본예산(14.3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배당확대 유인 …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영구화, 업종특성을 반영한 배당지표 제시

현행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고배당상주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geq 120\%$ and 총배당금액 증가율 $\geq 10\%$

②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geq 50\%$ and 총배당금액 증가율 $\geq 30\%$

* 시장평균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은 매년 9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을 구분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고시

※ 신규상장법인, 직전 3개년 배당이 없었던 기업의 경우 : 시장평균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 130% 이상인 경우 적용

이러한 고배당상주식 적용요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62.12%로 나타나 '적절하다'는 응답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고배당상주식의 적용요건에 대해 상장회사의 실무책임자들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당국에서 제시하는 배당지표와 관련하여 '① 각 시장별 업종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48.64%), ② 증권시장 전체를 통합하여 업종별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33.55%)'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상장회사의 실무책임자들은 업종별 특성

을 반영한 지표가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주주뿐만 아니라 배당실시법인도 향유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4.46%로 나타나, 정책당국의 정책순응에 따른 법인측면의 세제지원 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영구 법제화된다면, 향후에도 배당을 증가시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4.9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동 제도의 영구 법제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 기업소득 환류세 차감대상 범위에 해외투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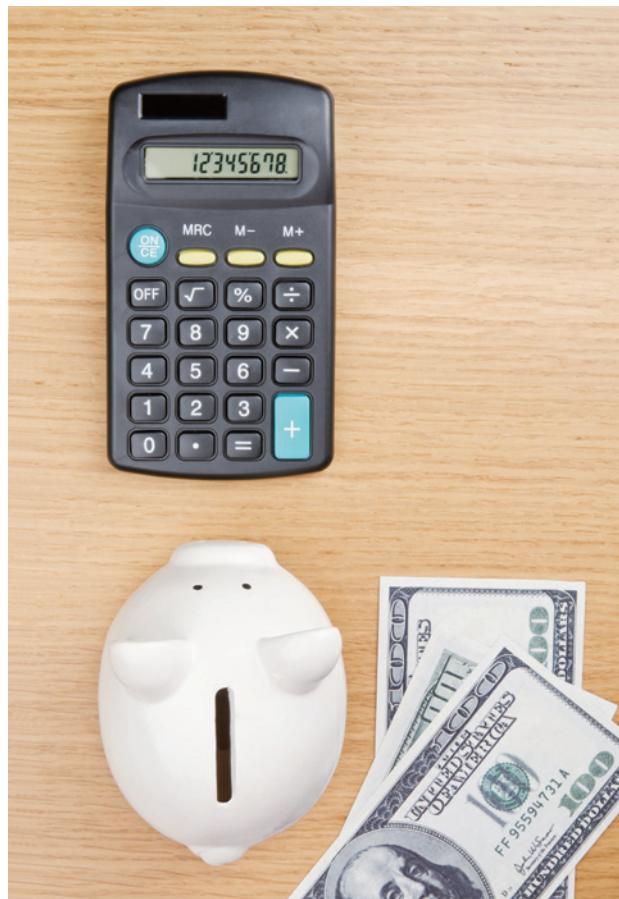
정책당국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 취지가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 및 임금증대를 통해 내수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 환류소득 산정시 차감되는 투자대상에 해외투자 및 고액연봉자 근로소득의 금액이 1억 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¹⁾의 임금증가액을 배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실무책임자들은 상당수의 기업이 글로벌 경쟁하에서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외투자를 기업소득 환류세 차감대상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53.77%)하였다.

세제개선건의 주요 내용

본회에서는 동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장기업의 배당확대 유도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안을 지난 4월 2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의 금액이 1억 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시장평균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산정시 업종특성 반영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은 업종별로 차별적 특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업의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동일업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으나, 시장별 지표에는 미달하는 경우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²⁾ 정책당국이 제시할 배당지표에 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선의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의 2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 (1안)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시장 내 업종별³⁾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 ▷ (2안) 증권시장을 통합하되, 업종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 배당소득세부담의 완화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한시적 적용은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과 대주주간에 기간별 이전거래를 통한 조세절감⁴⁾ 목적으로 배당 소득 증대세제 적용시기에만 일시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배당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가계 소득 증대 및 자본시장의 활성화라는 당초 정부의 입법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부담이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세 부담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즉, 주주가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기 보다는 단기 시세차익을 선호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 분	상장주식 양도소득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배당소득*
대주주	10 ~ 30%**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세율 38%)
소액주주	비과세***	14%

*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은 배제, 지방소득세율 제외

** 중소기업주식(1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주식(20%),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주식(30%)

*** 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시 양도소득세 과세

따라서 상장주식에 대한 장기투자를 장려하여 자본시장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배당상장주식에 대한 한시적인 원천징수세율 인하보다, 영구적으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선의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의 2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 (1안)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영구화하되, 고배당상장주식 적용요건을 3년 연속으로 충족하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적용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즉, 법인이 배당수준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고배당 상장주식 적용요건을 3년 연속으로 충족한 법인에 대해서는 총배당금액 증가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2안) 소액주주의 장기보유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액주주가 3년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중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낮은 원천징수세율(5%) 적용하고 종합소득 합산과세하지 않는 것이다.⁵⁾ 

-
- 2)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감사인지정 재무기준 요건인 부채비율 적용시에도 업종별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업종 특성이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부채비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현실을 반영코자 규정한 것이다.
 - 3) 업종의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기준에 따른 업종 (제조업 :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 4) 배당 실시 기업 : 기업소득 환류세제 세부담 절감 대주주 :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을 통한 배당소득세부담 절감
 - 5) 정부는 단기투자의 관행을 배당위주의 건전한 장기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舊 조특법 제91조)'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색을 만드는 기업

SAMHWAY 삼화페인트

지난 4월 9일 삼화페인트 안산 본사에서는 창립 69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300여 명의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삼화페인트 김장연 대표이사는 창립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것에 대한 축하와 이를 넘어서는 글로벌 세일즈 1조 원 시대를 향한 힘찬 포부를 밝혔다.





1946년 4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작은 기업으로 시작한 삼화페인트는 70년이 지난 지금, 오직 페인트 하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약 5,270억 원의 매출액과 460억 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시현하였고 그사이 가족은 950여명(3월 말 기준)으로 늘었다.

강력한 비즈니스 엔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No.1을 넘어 세계로 향해가는 삼화페인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성장동력을 색과 사람, 그리고 세계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서 찾아본다.

色

페인트의 모든 기술과 색, 기술연구소&컬러디자인센터

삼화페인트는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색을 만들어왔다. 외벽과 내벽, 바닥, 옥상에서 쓰이는 건축용은 물론 가전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내장재, 장난감, 캔음료까지 삼화페인트의 색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색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특별한 기능을 구현한다.

삼화페인트의 안산본사에는 ‘Beyond the Color’라는 슬로건이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쓰여 있다. 보여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고도화를 통해 페인트의 기능과 가치를 최대한 구현하겠다는 삼화페인트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 중심에는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기술연구소가 있다. 삼화페인트 기술연구소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미래도료기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화페인트 전체 인력 중 약 30%가 R&D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업계 최대 수치다. 연구개발비용도 해마다 늘어 매출액의 4%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까지 누적된 특허 등록 건수는 64건, 이중 대부분이 제품으로 이어져 세상과 만났다.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가 내화도료인 플레이 임체크 시리즈다. 1976년 우리나라 최초로 내화도료를 개발하였으며 지난 2013년, 기존 2시간을 넘는 3시간 내화도료 개발까지 성공했다. 내화(耐火)도료란 화재 발생 때 강력한 내화 성능을 발휘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특수 도료로, 건축물의 보와 기둥에 적용하였을 때 3시간까지 버티는 발포형 내화도료를 개발, 상품화했다.

삼화페인트에서는 컬러도 R&D다. 지난 2012년 연구센터급의 독립적 조직인 컬러디자인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색을 연구하고 관리하고 있다.



1.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삼화페인트 본사 및 공장 전경. 삼화페인트 기술의 산실인 기술연구소도 이곳에 있다

2.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삼화페인트 플래그숍 홈앤톤즈

3. 컬러커뮤니티를 표방하는 삼화페인트 플래그숍 홈앤톤즈의 1층 페인트 갤러리

약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컬러디자인센터는 컬러시스템 및 표준화를 만들고 있다.

컬러디자인센터의 첫 번째 성과는 페인트업계 최초로 색상을 정의한 색상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색상시스템이란 컬러를 색상과 채도, 명도에 따라 정의하여 코드화한 것이다.

색을 표준화 함으로써 누구나 생각하는 색이 같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지고, 레시피에 의해 언제든 일관된 색을 다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구축된 색상 시스템은 페인트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며 경쟁력이 된다.

삼화페인트는 세계 최고 색채전문기관인 스웨덴 NCS컬러AB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여 전세계적으로 표준 통용되는 NCS컬러코드를 도입하였으며, 선진 기술에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색을 추출하여 총 950컬러로 구성된 '삼화-NCS 콜렉션 950'을 만들었다.

컬러를 경험하고 컬러로 소통하는 컬러 커뮤니티 홈앤톤즈



건축용 페인트 시장 점유율 1위 삼화페인트는 이제 점점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외벽, 육상, 주차장 등 건물 바깥에서 쓰이던 페인트가 엘프 인테리어 바람을 타고, 벽지는 물론 문과 창틀, 가구, 인테리어 소품까지 물들이고 있는데 친환경, DIY 페인트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 중심에 삼화페인트 프리미엄 브랜드 더클래시가 있다.

삼화페인트 제품군 중 가장 상위 라인인 더클래시는 점차 커지고 있는 B2C시장 선점을 위해 삼화페인트의 70년 기술을 담아 개발했다.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더클래시는 국내 도료업계 최초로 한국과 미국에서 아토피 인증을 동시에 받았으며,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포름알데히드와 중금속도 함유하고 있지 않아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 화학회사인 듀폰과 테프론 표면보호제 기술 제휴를 통해 듀폰의 특수 소재를 제품에 접목, 시공 후 오염발생이 적고 먼지와 낙서가 쉽게 지워지도록 했다.

더클래시는 활용도에 따라 최적화된 벽지용, 문·가구용, 실내 벽면용, 높은 채도의 하이크로마 등 네 가지로 구분되며 색상은 '삼화-NCS 콜렉션 950' 컬러차트에서 고를 수 있다.

더클래시를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삼화페인트의 플래그숍 홈앤톤즈다. 공간(Home)에 컬러(Tones)를 담는다는 뜻의 홈앤톤즈는 컬러커뮤니티 공간을 표방하며 2013년 12월부터 고객과 직접 만나고 있다.



4. 삼화페인트의 인테리어용 페인트 더클래시는 국내 도료업계 최초로 한국과 미국에서 아토피 인증을 동시에 받았다

5. 삼화페인트는 업계최초로 체계화된 색상시스템을 구축, 색상과 채도, 명도에 따라 구분한 950가지 컬러를 제공하고 있다

6. 중남부권 유통거점이 되고 있는 충남 공주공장 물류창고

7. 삼화페인트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B2C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경향하우징페어의 삼화페인트 부스 전경





7

1층은 색을 보여주는 곳으로 더클래시 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DIY 페인트, 도구, 소품 등을 갤러리처럼 전시하여 놓았다. 2층은 색을 체험하는 곳으로 페인트를 이용한 DIY체험 클래스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일반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DIY 아카데미, 컬러 교육과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중 무료로 진행된다.

DIY 클래스가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수강 인원이 지난해만 약 8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경험한 셀프 페인팅은 만족도가 높아 제품 구매나 소개로 이어진다.

이뿐만 아니라 홈앤톤즈에서는 컬러디자이너의 전문 컨설팅, 맞춤 조색 같은 인테리어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인트 아트전시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페인트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유도한다.

컬러의 본질적인 기능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삼화페인트는 그 본질적인 컬러의 기능을 페인트로 구현하고 홈앤톤즈를 통해 알리고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世界化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종합 도료 기업 삼화페인트

7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삼화페인트가 리딩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품질경영과 끊임없는 기술개발,

우수한 인력, 앞날을 내다보는 탁월한 리더십 등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빼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대를 앞선 도전정신이다.

1946년 설립된 삼화페인트는 오직 페인트 외길만 추구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페인트라는 속성은 유지하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그 모습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왔다.

오늘의 삼화페인트를 만든 으뜸 공신은 건축용 페인트로 건축용 페인트의 뛰어난 품질은 오랫동안 삼화페인트가 건축용 페인트 1위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삼화페인트는 결코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환경에 대응하며 기존 제품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왔다. 그 예로 내부용 페인트의 베스트셀러 ‘뉴월드’, 친환경 페인트의 대명사 ‘아이생각’, 고기능 프리미엄페인트 ‘더클래시’와 같은 제품을 들 수 있다.

건축용 페인트의 강자인 삼화페인트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는 공업용, 특수 산업용 등 전방산업의 중간소재로 쓰이는 특수 도료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삼화페인트 공업용 도료의 대표 주자는 코일 강판용 PCM(Pre-Coated Metal) 도료다. 삼화페인트의 우수한 기술이 집약된 PCM도료는 대형 철강업체를 통해 우리가 쓰는 많은 제품의 바탕이 되고 있다.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 무공해 도료로 불리고 있는 분체도료도 삼화페인트가 장점을 갖고 있는 분야다. 지난해 완공한



허성 COO

삼화페인트

1. 현황

- 업종 : 건축용, 중방식용, 특수공업용, 플라스틱용, DIY 페인트 생산
- 설립일 : 1946년 4월 9일
- 상장일 : 1993년 9월 10일
- 본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서울지사 :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58)
- 대표 브랜드 : 더클래시, 아이생각, 훔스타 파스텔 OK플러스, 스케치페인트 등

2. 주요 이력

- 1946. 4 동화산업(주) 설립
- 1953. 9 삼화화학공업(주)로 상호 변경
- 1964. 7 삼화페인트공업(주)로 상호 변경
- 1966. 6 국내 최초 페인트 해외수출(베트남)
- 1976. 3 대통령 표창 수상(납세모범기업)
- 1976. 5 국내 최초 방화도료 개발
- 1980. 6 동탑산업훈장 수상(납세모범기업)
- 1993. 7 시화공장 준공
- 1993. 9 한국거래소 신규 상장
- 2000. 5 위해삼화도료유한공사 설립
- 2002. 9 유성 내화도료 내화구조 인증서 획득
- 2004. 1 삼화도료(정가항)유한공사 설립
- 2008. 11 김해공장 준공
- 2010. 3 (주)코아네트 계열회사 추가
- 2010. 10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 2011. 8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 2012. 6 (주)에스엠트루트워克斯 계열회사 추가
- 2013. 3 공주공장 준공
- 2013. 12 플래그숍 흄앤톤즈 오픈
- 2014. 1 (주)삼화로지텍 계열회사 추가

삼화페인트 공주공장은 분체도료 연구실 및 분체도료 QA팀을 설치, 엄격한 기준으로 분체도료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삼화페인트의 우수한 공업용 도료는 전기 · 전자, 자동차, 플라스틱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 적용되며 페인트를 저성장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삼화페인트는 중국 위해와 장가항,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에 계열 법인을 두고 PCM도료와 전자재료 플라스틱 도료 등 고부가가치 도료의 생산지로 활용하는 동시에 현지화를 통한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을 향한 베이스캠프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삼화페인트는 페인트 한류화를 통해 대한민국 No.1을 넘어 세계 최고의 페인트 회사로 도약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삼화페인트는 페인트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과 요구를 읽고 만족시킬 수 있는 페인트 그 이상(Beyond the Color)이 탄생할 때까지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설자

삼화페인트 대표브랜드

더클래시



고기능성 프리미엄 페인트로 업계 최초 미국과 한국에서 아토피 알러지 케어 인증을 받았다. 작업 때 냄새가 거의 없어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도 건강에 대한 염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오염이 묻어도 쉽게 지워지는 기능과 황균기능, 곰팡이 억제 기능, 탁월한 내후성이 특징이다. 더 클래시는 최고의 프리미엄 친환경 페인트로 DIY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이생각

건축용 수성페인트의 대표주자로 은폐력이 우수하고 작업성이 뛰어나 비교적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데서 이름을 딴 친환경 수성페인트답게 납,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이 들어있지 않으며 환경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충족한다.



뉴월드 수성

지난 20여년 간 내부용 페인트 중 최대 매출을 기록한 제품이다. 뉴월드 수성페인트는 1997년 '월드텍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시됐다. 이후 2003년 광택을 줄이고 갈라짐이 생기지 않는 '월드텍스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2010년에는 친환경 제품 수요에 맞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비닐-아크릴에멀전을 사용한 냄새 없는 페인트로 다시 한 번 진화하였다. 그 때 완성된 이름이 뉴월드로 삼화페인트 스테디셀러의 명맥을 잇고 있다.



삼화페인트는 최근 국악소녀 송소희를 모델로 한 프리미엄 페인트 더클래시의 TV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발행 시장

2015년 3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총 13조 5,368억원으로 전월(8조 1,353억원) 대비 5조 4,015억원 증가(66.4%↑)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중 주식발행 규모는 1조 479억원으로 전월(1,597억원) 대비 8,882억

원 증가(556.2%↑)하였으며, 전년 동기(6,213억원) 대비 9,257억원 증가(149.0%↑)하였다.

기업공개는 4건 388억원으로 전월에 이어 여전히 부진한 양상을 보였으나, 유상증자는 3건 1조 91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의한 대규모 발행이 이뤄졌다.

2015년 3월중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조 4,889억원으로 전월(7조 9,756억원) 대비 4조 5,133억원 증가(56.6%↑)한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8.1%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초 부진했던 회사채 발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조달비용 감소로 3월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사채는 5조 1,700억원으로 전월(3조 6,190억원) 대비 1조 5,510억원 증가(42.9%↑)하였고, 금융채는 2조 6,275억원으로 전월(1조 5,350억원) 대비 1조 925억원 증가(71.2%↑)하였다. 또한, ABS는 1조 8,749억원으로 전월(6,170억원) 대비 1조 2,579억원 증가(203.9%↑)하였고, 은행채는 2조 8,165억원으로 전월(2조 2,046억원) 대비 6,119억원 증가(22.8%↑)하였다.

2015년 3월중 일반회사채 발행실적은 업종별, 신용등급별, 자금용도별, 만기별, 금융채별로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1조 8,100억원) 및 전기·가스·수도사업(1조 4,300억원) 순으로 발행하였다.

신용등급별로는 AAA등급 1조 1,500억원, AA등급 3조 2,200억원, A등급 7,700억원으로 BBB등급은 300억원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용도별로는 운영자금 3조 2,850억원(63.5%), 차환자금 1조 5,300억원(29.6%), 시설자금 3,550억원(6.9%) 발행한 것 나타났다.

만기별로는 1년 초과 5년 이하의 중기채는 3조 4,500억원(66.7%), 만기 5년 초과의 장기채는 1조 7,200억원(33.3%) 발행되었으며, 단기채는 발행되지 않았다. 금융채는 전월에 일시적으로 급감했던 카드채 발행이 일정 수준 회복되는 등 3월중 금융채 발행액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실적^{주1)}]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월	2015년 3월	전월대비(%)
조달총액	81,353	135,368	+66.4
주식 ^{주2)}	1,597	10,479	+556.2
기업공개	118	388	+228.8
유상증자	1,479	10,091	+582.3
회사채	79,756	124,889	+56.6
일반회사채	36,190	51,700	+42.9
금융채	15,350	26,275	+71.2
ABS	6,170	18,749	+203.9
은행채	22,046	28,165	+27.8

주1) 증권신고서 제출(공모) 기준, 납입일 기준

주2) 신주모집을 통한 자금 조달실적이며 주매출·출자전환·현물출자는 제외

유가증권시장

유통 시장

4월의 유가증권시장은 월초 KOSPI 지수가 2,041.03P에서 출발하여, 월초대비 86.14P 상승한 2,127.17P로 4월 증시를 마감하였다.

첫날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 행렬에 나서 12.58P 하락하며 약세장으로 시작하였으나 3일 이란 핵협상 타결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가 투자심리를 부추기며 16.35P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간신히 기록하였고, 8일에는 장중 한때 2,060P 돌파를 시도하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무산 우려 및 중국 정부가 과열된 증시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용거래규제 강화와 공매도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7일연속 상승하며 2,140P선에 안착하였다. 23일에는 29.52P가 상승 2,173.41P로 연중 최고치를 경

신하였고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5일연속 하락세를 보여 2,100P를 유지하는데 만족하며 4월장을 마감하였다.

코스닥시장

4월의 코스닥시장은 월초 KOSDAQ 지수가 650.49P에서 출발하여, 월초대비 38.52P 상승한 689.01P로 4월의 증시를 마감하였다.

소폭의 하락세로 첫날장을 마감한 코스닥시장은 17일 7년 3개월 만에 700P를 돌파한 후 21일 714.52P로 상승세를 유지하다 22일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동반 하락하며 700P가 붕괴되었다. 이후 4월장에서의 700P 재안착은 실패하며 마지막장을 마감하였다.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공시 '사전확인제' 폐지 추진

금융위원회는 4월 24일 상장사들이 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공시하기 전 한국거래소의 사전확인을 맡는 절차를 폐지하고 잘못된 풍문에 대해선 기업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시를 통해 해명하는 '자발적 해명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거래소 공시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으로 생산활동 재개, 기술도입 같은 투자 활용도가 낮거나 자율적인 공시가 가능한 공시항목을 폐지 또는 자율 공시항목으로 이관해 기업들의 공시 피로도를 낮춰줄 계획이다. 대신 임원 횡령·배임 등 투자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공시내용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보완키로 했다.

거래소의 공시내용 사전확인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통상 상장법인이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기재오류 여부,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배포한다. 일부 유가증권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전확인 절차가 면제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예 사전확인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자율적으로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들은 전보다 빨리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의 제도도 도입된다. 해당 국가들은 풍문·보도 등이 내부정보에 기인하거나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시를 통해 해명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국내 자본시장에 적용해 기업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시를 통해 해명하는 '자발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업들의 공시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 또한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불성실한 공시가 지속될 경우 거래소에서 해당 기업의 공시책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교체 요구권'을 신설해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장치 개편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 장치 정비 등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4월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당초 예정대로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며, 시행시기와 세부사항은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를 새로 도입한다.

시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이후 이 단일가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변동 폭이 ±10%로 재설정된다. 현재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서킷브레이커(CB) 제도는 8%, 15%, 20% 등 지수하락률을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된다.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주식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현재 가격제한폭은 상품별로 ±10~30%였으나 앞으로는 ±8~6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코스피200선물·옵션에 대한 가격제한폭은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로 확대된다. 상품 가격이 1단계 가격제한폭인 전일 종가 대비 ±8%에 이르면 5분간 추가로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못하고, 5분 경과 후 다음 단계까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방식이다.

변동성지수선물 가격제한폭은 ±30%, ±45%, ±60%의 세 단계로 확대된다. 개별 주식선물과 옵션의 가격제한폭은 ±10%, ±20%, ±30%로 확대된다.

파생상품시장 거래도 주식시장에 연동해 CB가 단계별로 발동된다. 가격 변동범위 확대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도 도입된다. 코스피200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예탁총액이 장중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은 위탁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공시규정 개정,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무 완화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등에 대한 공시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조건의 변경 사항뿐 아니라 계약 진행 상황도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약 진행 상황을 매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계약 기간 변경 등의 사항도 정정 공시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투자를 고려해 계약금액과 조건 변경 내용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술성장기업 공시부담 완화(코스닥)로 현행 신규상

장 시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일반 기업에 비하여 반기별 사업진행 상황 및 영업실적 전망(향후 3년) 등 상대적으로 추가되는 공시의무 부담 등을 폐지하여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적 규제는 해소한다고 밝혔다.

기타 공시제도 개선사항으로는 IFRS 도입에 따라, 그간 공시의무 이행여부 판단에 다소 혼란이 있었던 사항을 명확히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시규정 상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과 특히,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계위반금액 경미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제외

4월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횡령과 분식 등으로 검찰이 고발한 코스피 상장사 중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일 경우 경우에는 시장 퇴출을 논의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매매거래 정지와 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

빠른 시장 조치를 위해 자본잠식률을 산정하는 방법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종속회사 비(非)지배지분을 제외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자본총액 전체를 기준으로 실질심사 사유를 판단한다.

또 상장사가 자본잠식이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동일 감사인이 금융위원회의 업무 제한 조치 등을 받았을 경우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지정 감사인이나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거래소는 또 상장사가 주권을 추가·변경 상장할 때 서류 제출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추가·변경 상장을 신청할 때 주권 견양(견본)을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견양 대신 발행증명서를 내면 된다. 또 신청서류를 상장 예정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으로 명시했다.

중소·벤처기업 상장조건 완화

한국거래소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기술기업들의 평가수수료

와 평가기간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즉시 상장 진입을 낮추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 27일부터 벤처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기술특례 상장제도(2005년 3월 도입)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등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9주에서 약 4주로 단축하고, 평가대상기업이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해 상장비용부담을 대폭 내릴 계획이다.

자율적 평가신청시스템도 도입되며 평가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간 편차 해소 방법 역시 마련됐다.

기존 22개 평가기관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3사로 전환, 평가기관간 편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내부통제, 사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적용)까지 특례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점도 큰 변화다. 기존에는 벤처기업만 기술기업 상장특례대상이었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을 위해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할 TCB 3사(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와 지난달 31일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육성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4월 23일 자본시장 개혁 15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코넥스·장외·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 세 가지를 밝혔다.

우선적으로 코넥스시장 예탁금 규제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예탁금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늘려 일평균 거래액이 10억원 안팎인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인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의 기본 예탁금도 폐지된다. 현재 랩어카운트 예탁금은 1억원에 달해 자산이 적은 투자자들은 사실상 랩어카운트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중소·벤처기업의 코넥스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문턱도 크게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과 매출액 등 코넥스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을 폐지했다. 코넥스 상장 예비기업 발굴과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정자문인(증권사)은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제도도 도입된다. 특례상장을 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거나 기술신용 평가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또 기관투자가가 특례상장과 지분매각 제한에 동의해야 한다.

또 코스피200 선물·옵션 대비 거래단위를 5분의1로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 선물·옵션 도입된다. 거래단위가 기존의 20% 수준으로 줄면 기본 거래단위가 2,600만원 정도로 낮아짐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동성이 높고 주식이 고루 분산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우량종목 선물이 대상으로 코스닥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도 출시된다. 배당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배당지수 선물과 무역결제, 대중국 투자 등의 위험관리를 위한 위안화 선물상품도 상장된다.

기업 M&A 촉진 '원샷법' 추진

4월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행사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아들여야 하는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어나고 또한 사업재편 M&A 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법제처 등이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일명 원샷법)' 조안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샷법은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해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으로 기업이 사업재편 시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전환을 쉽게 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기업 사업조정과 관련된 규제를 특별법으로 제정해 한 번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M&A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약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A 기업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M&A 기업의 취득·등록세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던 취득·등록세 중과도 적용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또 주주총회 절차 없이 합병·주식교환·회사분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약식 사업재편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총을 건너뛸 수 있는 제도다.

주총이 생략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상법에는 합병 후 남게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합병건에 대한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 규정이 있다. 최장 120일인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절반가량으로 줄여주는 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사업재편 기간에 적대적 M&A 시도 방지, 수도권 토지 매입 시 중과세 배제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

액면분할시 거래정지 5일로 축소

한국거래소는 4월 29일 주권상장법인이 액면분할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6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주식 수가 정수의 배로 증가하는 액면분할 기업의 주식이다. 지금까지는 구주권 제출 마감 전날부터 신주 상장일까지 10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돼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과 거래불편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거래소는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상장신청일 다음날 변경상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발행사에 주권을 신속하게 인쇄하도록 하는 등 주권인쇄와 교부일정 등을 조율했다.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을 3.1%로 하향 조정

한국은행은 4월 9일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1%로 하향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0.9%로 낮췄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올해 성장을 전망치인 3.8%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로써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치는 1년만에 1.1%포인트 떨어지게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 올해 성장을 전망치를 4.2%로 제시한 후 7월과 10월 4.0%, 3.9%로 낮췄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3.4%로 하향 조정했고 이번에 다시 0.3%포인트 내렸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2월부터 물가상승률이 올해 3월까지 4개월 연속 0%대에 머문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한국은행 4월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다. (상장)

2014사업연도 12월 결산사 정기주주총회 개황분석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30개사(2015.4.1.자 현재) 중
'12월 결산사'는 총 710개사이며,

- 조사대상은 12월결산사 중 주주총회관련 사항을 공시한 국내법인 700개사(98.59%)임
(외국법인, 기업회생 및 신규재상장사 제외).

1. 개최일자 · 요일별 분포

개최월	주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총합계
2월	3주	-	1	-	-	-	1
	4주	-	-	1	-	3	4
2월 합계		-	1	1	-	3	5
3월	1주	-	-	-	-	2	2
	2주	-	2	1	-	58	61
	3주	4	2	1	13	252	272
	4주	5	10	9	18	274	316
	5주	17	27	-	-	-	44
3월 합계		26	41	11	31	586	695
총합계		26	42	12	31	589	700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기준
(2015.4.1.자)

2. 개최지역별 분포

(1) 전국 개최현황

지역	회사수	구성비
서울특별시	360	51.4
경기도	128	18.3
경상남도	41	5.9
부산광역시	27	3.9
충청남도	25	3.6
인천광역시	21	3.0
대구광역시	18	2.6
울산광역시	18	2.6
충청북도	14	2.0
광주광역시	10	1.4
경상북도	9	1.3
전라남도	8	1.1
대전광역시	7	1.0
전라북도	7	1.0
강원도	3	0.4
세종특별자치시	3	0.4
제주특별시	1	0.1
총합계	700	100.0

이 자료는 본회에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의 201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개황을 분석한 자료입
니다.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본회 기업법제팀 (02-2087-
71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현황

행정구분	회사수	구성비
강남구	64	17.8
중구	58	16.1
영등포구	50	13.9
서초구	48	13.3
종로구	36	10.0
마포구	19	5.3
송파구	16	4.4
용산구	13	3.6
동작구	9	2.5
구로구	8	2.2
강서구	8	2.2
서대문구	7	1.9
금천구	6	1.7
동대문구	4	1.1
강동구	4	1.1
성동구	4	1.1
관악구	2	0.6
양천구	2	0.6
중랑구	1	0.3
도봉구	1	0.3
총합계	360	100.0

※ (1) 및 (2)는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기준
(2015.4.1.자)

3. 개최시간별 분포

개최시간	회사수	구성비
오전 8:00	10	1.4
오전 8:30	11	1.6
오전 9:00	311	44.4
오전 9:30	37	5.3
오전 10:00	249	35.6
오전 10:30	23	3.3
오전 11:00	42	6.0
오전 11:30	5	0.7
오후 1:30	4	0.6
오후 2:00	5	0.7
오후 2:20	1	0.1
오후 2:30	1	0.1
오후 3:00	1	0.1
총합계	700	100.0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기준
(2015.4.1.자)

4. 주주총회 상정의안 현황

상정의안	회사수	구성비
이사보수	673	77.6
재무제표 승인	616	76.0
이사선임	594	68.5
감사보수	404	46.6
정관변경	263	30.3
감사위원	197	22.7
감사선임	124	14.3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36	4.2
주식매수선택권	16	1.8
이익배당	11	1.3
이사해임	4	0.5
자본감소 승인의 건	0	0.0
합병계약 승인의 건	0	0.0
회사분할 승인	1	0.1
영업양수도 계약 승인	1	0.1
임원보수	1	0.1
주식액면분할	1	0.1
우리사주 매수선택권부여의 건	1	0.1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기준
(2015.4.1.자)

5. 이사회의 재무제표 및 배당의 승인

■ 재무제표 승인관련 정관규제현황

- 조사대상 12월결산사 700개사 중 재무제표 승인권한은 정관별로(2013사업년도 사업보고서 기준) ① 주주총회(380 개사, 54.3%), ② 이사회(320개사, 45.7%)로 분포

〈최근 12월결산사 '재무제표 결정기관'관련 정관기재 현황〉

기관구분	2015년		2014년		증감율 (%)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이사회	320	54.3	286	41.5	12.8
주주총회	380	45.7	103	58.5	-12.8
총합계	700	100.0	689	100.0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연도별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 기준

■ 재무제표등 이사회 승인현황

- 회사가 정관으로 재무제표의 승인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320개사 중 84개사(12.0%)가 재무제표관련 이사회 결의 이후 주주총회에서 보고함으로써 최종 확정함.

* 상법 제449조의2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2011년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일정요건(①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②외부감사의 적정의견)을 갖춘 회사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위의 회사 중 이익배당을 포함하여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확정한 회사는 61개사를 차지

〈 2015년 12월결산사 재무제표 결정기관 및 (현금)배당현황 〉

기관구분	무배당		유배당		총합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이사회	23	3.3	61	8.7	84	12.0
주주총회	194	27.7	422	60.3	616	88.0
총합계	217	31.0	483	69.0	700	100.0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014사업년도' 사업보고서 기준

- 한편, 배당결정기관별로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비해 높은 배당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평균 배당성향 및 평균 시기배당률 모두 이사회인 회사가 높게 나타나.

〈 상장법인 배당결정기관별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 비교 〉

(개사, %, 백만원)

재무제표 및 배당 결정기관	회사수	1사당 당기순익(A)*	1사당 현금배당금(B)	평균배당성향 (B/A×100)	평균 시기배당률**
이사회	61	25,498	7,023	27.54	1.92
주주총회	422	140,738	35,702	25.37	1.69
총계	483	126,184	32,080	25.42	1.72

* 1사당 당기순익(A)은 당기순손실 금액을 포함한 평균임.

** 회사별 배당수익률을 합하여 회사수로 나눈 수치임.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결과' 및 '2014사업년도' 사업보고서 기준(2015.4.1.자)

■ 이사회에 의한 배당결정의 긍정적 효과

- 현행 상법 제462조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당절차의 단축 및 재무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음.
- 한편, 최근의 기업현실에서는 투자 및 자본조달정책을 관리하는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비롯한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것 이 주주환원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6. 12월결산사 중 '주총소집결의' 공시 이후 '총회일' 간의 날짜격차현황

〈 12월결산사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시점 현황 〉

구분	2015년			2014년			구간별 증감율 (%P)
	회사수	구성비	누적비율	회사수	구성비	누적비율	
총회 6주전	58	8.3	8.3	14	2.0	2.0	6.30
총회 5주전	27	3.9	12.1	28	4.1	6.1	-0.20
총회 4주전	117	16.7	28.9	94	13.6	19.7	3.10
총회 3주전	201	28.7	57.6	217	31.5	51.2	-2.80
총회 2주전	297	42.4	100.0	336	48.8	100.0	-6.40

* 한국거래소(KIND) 공시서식 중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기준(연도별 1.1~3.31)

** 조사대상회사수 : 2014년(689개사), 2015년(700개사)

※ 비율 및 누적비율은 연도별 조사대상회사수 대비 비중임.

- 총회일 기준 6주전 또는 4주전에 주주총회 소집관련 수시공시가 직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까닭은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결의(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장소의 결정)' 외에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의 결산' 및 '의결권행사제도의 결정' 등을 동일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즉, 회사는 총회 6주전(또는 4주전)에 ① 직전 사업년도 재무제표의 결산관련 이사회 개최*와 ②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이른바 '섀도우보팅')의 신청 등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실무적 수요가 존재함.

* 「상법」상 회사는 총회 6주전 재무제표의 작성관련 결산이사회의 개최의무가 있고(상법 제447조 내지 제447조의3), 최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증선위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별도(개별) 재무제표는 총회 6주전, 연결재무제표는 총회 4주전에 제출의 무가 있음(외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도입여부를 결정(상법 제368조의4)하고, 총회 25일전까지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위탁계약 체결하여야 함(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9조). 예탁원 시스템을 통한 위임장 교부 및 위임행위의 전자화가 이루어지는 「전자위임장」을 도입할 경우도 동일한 절차 및 기한이 적용됨. 한편, 회사가 새도우보팅의 신청 및 신청을 위한 전제요건(①전자투표제도 도입, ②전주주 대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실시)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그 시점은 총회 6주전 또는 4주전에 주로 이루어짐.

7. 2015년 12월 결산사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정현황

정정사유	정정건수	구성비
① 기 공시한 내용을 정정한 회사	85	12.1
② 공시정정이 없었던 회사	615	87.9
	700	100.0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기준
(2015.4.1.자)

- 총회일 전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정정한 회사는 85개사로 12월 결산사 중 12.1%에 해당됨.

- 주요 정정사유로는 ① 임원 후보자의 확정(추가)(34.1%), ② 단순기재오류의 정정(23.5%), ③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에 따른 승인안건조정(16.5%) 등의 순이었음.

〈'주주총회 소집결의'의 주요 '정정'사유 (중복)〉

정정사유	정정건수	비중*
① 승인안건의 변경	49	57.65
임원 후보자 확정(추가)	29	34.12
임원 후보자 사퇴	9	10.59
임원의 구분변경	3	3.53
정관변경의 정정	2	2.35
기타 안건의 추가	4	4.71
기타 안건의 철회	2	2.35
② 단순기재오류 정정	20	23.53
③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에 따른 안건의 정정	14	16.47
④ 공시서식 보완(첨부서류 등)	8	9.41
⑤ 회의장소 또는 일시의 변경	4	4.71
⑥ 보고안건의 철회	1	1.18

*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를 정정한 85개사 대상 비중임.

상장

2014사업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실시 현황

1 조사 개요

- 분석대상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703개사*

*사업보고서제출일 기준, 상장폐지예정법인, 투자회사 및 외국법인 제외

2 현금배당 현황

- 현금배당 규모 확대

- ’14년 현금배당*을 실시한 상장법인 수는 전년 대비 26개사 (3.5%p) 증가한 총 483개사, 현금배당 총액은 3조 1,851 억원(25.87%) 증가한 15조 4,948억원으로 나타남.

- 보통주 및 우선주 배당 480개사, 우선주만 배당 3개사

*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한 현금배당

〈 전체 상장법인 현금배당 증감현황 〉

구분	2014년 배당(①)		2013년 배당(②)		증감율	
	법인수	배당총액	법인수	배당총액	법인수 (①-②)	배당총액 (①-②)/②)
보 통 주	480/ 703개사 (68.28%)	145,567 억원	456/ 701개사 (65.05%)	113,469 억원	3.2%p	28.3%
우 선 주	88/ 703개사 (12.52%)	9,381 억원	76/ 701개사 (10.84%)	9,628 억원	1.7%p	△2.57%
전 체	483/ 703개사	154,948 억원	457/ 701개사	123,097 억원	3.5%p	25.87%

- 2년 연속 현금배당 실시 : 433개사(703개사 중)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433개사, 현금배당 총액은 14조 2,5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943억원(23.3%) 증가

- 시가총액 상위사, 현금배당 확대

- 시가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상장회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기 대비 4조 2,450억원(△8.1%) 감소

이 자료는 본회에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2014사업연도 배당실시 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본회 회계제도팀(02-2087-71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규모는 2조 6,603억원(25.7%) 증가함.

- 이는 기업이 경영여건 악화 및 순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기업배당 확대기조와 주주를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2년 연속배당사 시가총액 규모별 배당현황 〉

시가총액 규모	배당사 (개사)	당기순이익(억원)				현금배당금(억원)				배당성향(%)	
		2014	2013	증감	증감률(%)	2014	2013	증감	증감률(%)	2013	2014
1조 초과	119	481,803	524,253	△42,450	△8.1	130,177	103,573	26,603	25.7	19.8	27.0
2,500억 이상 ~ 1조 미만	118	41,947	26,058	15,889	61.0	8,030	7,697	333	4.3	29.5	19.1
1,000억 이상 ~ 2,500억 미만	105	13,878	15,894	△2,016	△12.7	3,182	3,138	45	1.4	19.7	22.9
500억 이상 ~ 1,000억 미만	51	2,752	2,535	217	8.5	892	932	△40	△4.3	36.8	32.4
250억이상 ~ 500억 미만	35	86	240	△154	△64.0	282	282	0	△0.1	117.4	326.3
250억미만	5	△60	△47	△13	28.5	21	20	2	8.3	-	-
전 체	433	540,405	568,933	△28,528	△5.0	142,583	115,641	26,943	23.3	20.3	26.4

*보통주 현금배당기준, 배당률= 보통주 주당 현금배당금 / 주당 액면금액

■ 차등배당

- 보통주 현금배당과 관련하여 차등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총 15개사로 전체 중 3.13%를 차지

〈 차등배당 현황 〉

연도	보통주 배당 기업수	차등배당 기업수	차등배당 비중(%)	소액주주 배당률(액면,%)			대주주 배당률(액면,%)		
				최소값	평균	최대값	최소값	평균	최대값
2014년	480개사	15개사	3.13	0.20	17.16	140.00	0.00	8.11	70.00
2013년	456개사	13개사	2.84	0.20	17.00	80.00	0.00	8.58	40.00

*보통주 현금배당기준, 배당률= 보통주 주당 현금배당금 / 주당 액면금액

3 주식배당(보통주)

■ 2014년 보통주 주식배당은 총 15개사, 172.9억원 실시

-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703개사 중 2.13%를 차지, 전년도 대비 0.28%p 증가(전년도 : 701개사 중 13개사, 1.85%)

* 주식배당사 : 국제약품공업, 동일고무벨트, 동일방직, 명문제약, 무학, 미래에셋증권, 부광약품, 부산주공, 선창산업, 신풍제약, 에이블씨엔씨, DRB동일, S&T홀딩스, SK가스, TCC동양

- 주식배당을 실시한 15개사 중 현금배당을 병행한 14개사(무학 외)의 평균 주식배당액*은 7.2억원 증가한 반면, 현금배당액*은 13.9억원 감소함.

* 보통주 배당금 기준

〈 주식-현금배당 병행사 배당 증감 〉

구분	주식배당		현금배당		증감(증감율)	
	배당총액(억원)	평균배당금(억원)	배당총액(억원)	평균배당금(억원)	주식배당	현금배당
2014년	172.94	12.35	466.14	33.30	7.21억 (140%)	△13.91억 (△29.5%)
2013년	61.68	5.14	566.52	47.21		

*현금-주식 병행 배당사 : 2013년 12개사, 2014년 14개사(무학 외), 보통주 배당금 기준

4 업종별 · 시가총액 규모별 · 당기순이익 규모별 배당현황

〈 업종별 배당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

구분	2014년						2013년					
	대상사수	배당사수	순이익	현금배당금	배당성향	시가배당률	대상사수	배당사수	순이익	현금배당금	배당성향	시가배당률
구분	39	21	3,927	2,471	62.91	2.21	40	20	7,857	2,262	28.79	2.35
비금속	20	15	2,862	575	20.10	1.76	20	12	1,666	431	25.89	2.43
섬유의복	25	15	2,814	450	16.00	1.29	23	15	2,770	420	15.18	1.83
운수장비	45	34	105,829	17,377	16.42	1.77	47	39	120,596	14,637	12.14	2.15
음식료품	36	26	7,712	2,547	33.02	1.31	36	25	9,942	2,166	21.79	1.19
의료정밀	4	3	291	83	28.55	1.40	4	2	226	45	19.99	1.55
의약품	35	25	4,260	1,109	26.03	1.13	36	27	6,889	987	14.32	1.20
전기전자	54	30	200,091	37,282	18.63	1.36	56	28	184,575	24,626	13.34	1.47
종이목재	22	12	526	341	64.74	2.84	23	14	1,526	504	33.04	2.77
철강금속	42	30	28,284	9,679	34.22	1.80	42	31	46,596	9,077	19.48	1.92
화학	90	73	35,683	10,906	30.56	1.91	92	72	41,054	11,839	28.84	2.12
제조업	423	290	400,419	87,253	21.79	1.72	431	289	428,998	71,123	16.58	1.92
건설	29	11	793	2,463	310.68	1.48	32	9	4,869	1,405	28.86	1.99
서비스	106	79	61,213	15,438	25.22	1.67	97	73	50,482	17,366	34.40	1.98
운수창고	21	13	7,304	963	13.18	1.13	21	12	3,112	723	23.22	1.24
유통	55	37	28,365	5,214	18.38	1.32	55	32	27,429	3,899	14.21	1.18
전기기기	11	11	14,105	4,111	29.14	2.11	11	10	5,963	1,419	23.80	2.55
통신	3	2	12,726	7,323	57.54	2.41	3	3	7,954	9,270	116.55	2.66
비제조업	231	155	124,709	35,627	28.57	1.56	225	141	100,495	34,223	34.05	1.77
금융업	49	38	84,340	32,068	38.02	2.34	45	27	45,030	17,751	39.42	1.62
총합계	703	483	609,469	154,948	25.42	1.72	701	457	574,523	123,097	21.43	1.86

*현금배당금 : 보통주 및 우선주 현금배당금 총액

**시가배당률 : 보통주 현금 기준

〈 시가총액 규모별 배당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

시가총액 규모	2014년							2013년						
	대상사수	배당사수	순이익	현금배당금	배당성향	액면배당률	시가배당률	대상사수	배당사수	순이익	현금배당금	배당성향	액면배당률	시가배당률
1조 초과	158	135	547,382	140,890	25.74	97.24	1.38	142	120	528,707	109,932	20.79	84.44	1.17
2,500억 이상~1조 미만	158	130	43,690	9,111	20.85	32.95	1.47	147	109	25,980	8,218	31.63	33.82	1.60
1,000억 이상~2,500억 미만	162	113	15,025	3,649	24.28	22.36	1.91	154	112	15,951	3,374	21.15	21.55	1.97
500억 이상~1,000억 미만	114	58	3,051	966	31.66	19.52	2.35	120	63	3,459	1,129	32.64	17.57	2.65
250억 이상~500억 미만	86	40	363	307	84.48	8.68	2.18	93	46	436	398	91.31	11.07	2.69
250억 미만	25	7	-43	26	-	7.71	1.81	45	7	-10	47	-	12.71	3.23
전체	703	483	609,469	154,948	25.42	44.45	1.72	701	457	574,523	123,097	21.43	39.25	1.86

*액면, 시가배당률 : 보통주 현금 기준

〈 당기순이익 규모별 배당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

시가총액 규모	2014년							2013년						
	대상사수	배당사수	순이익	현금배당금	배당성향	액면배당률	시가배당률	대상사수	배당사수	순이익	현금배당금	배당성향	액면배당률	시가배당률
1,000억 초과	85	74	547,049	126,616	23.15	142.18	1.71	77	73	527,981	98,172	18.59	116.69	1.43
500억 이상~1,000억 미만	49	43	30,579	8,729	28.55	46.16	1.31	43	37	26,255	6,717	25.58	38.02	1.37
100억 이상~500억 미만	186	167	39,414	11,874	30.12	34.52	1.72	180	161	35,368	9,197	26.00	32.65	1.88
50억 이상~100억 미만	89	74	5,334	2,101	39.40	22.56	1.85	78	61	4,545	1,586	34.90	18.89	1.99
50억 미만	126	90	2,168	1,884	86.88	13.47	1.92	132	82	2,101	1,295	61.65	13.82	2.48
당기순손실	168	35	-15,076	3,743	-	9.06	1.40	191	43	-21,727	6,131	-	10.96	1.55
전체	703	483	609,469	154,948	25.42	44.45	1.72	701	457	574,523	123,097	21.43	39.25	1.86

*액면, 시가배당률 : 보통주 현금 기준

5 배당 승인 주체별 배당현황

-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회사*의 배당성향 및 시가배당률이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한 회사보다 높음.

* 배당실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재무제표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나, ①외부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고 ②감사(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 승인 등(이익배당의 결정 포함)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할 수 있음(상법 제449조의2).

-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상장회사는 유배당사 중 61개사(12.63%)로 4,284억원의 배당을 실시
 -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경우보다 배당성향은 2.17%p, 시가배당률은 0.2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정책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방식이 주주환원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유배당사 배당 결정기관별 배당현황 〉

구분	유배당 법인수	당기순이익(①)	현금배당금(②)	배당성향 (②/①*100)	시가배당률(평균)
이사회	61개사(12.63%)	15,554억원	4,284억원	27.54%	1.92%
주주총회	422개사(87.37%)	593,914억원	150,664억원	25.37%	1.69%
합계	483개사	609,469억원	154,948억원	25.42%	1.72%

상장

IFRS 적용실무 해설

85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지분 처분 시 법인세 회계처리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 또는 납부할 법인세금액을 일정 요건 및 예외조항을 고려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등 투자지분의 경우 종속기업 등의 미배당이익의 증가로 지배회사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인 세무기준액을 초과하여 일시적차이가 발생하고, 또 손상으로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감소하거나 해외 종속기업의 통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일시적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종속기업 등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지배기업 등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기를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지분에 대한 일시적차이는 처분 또는 배당을 통하여 소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이연법인세는 이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를 반영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종속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 지분 일부 처분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 지분의 감소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거래로 회계처리되므로 전부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미배당이익의 증가에 따른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는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1.

P기업은 2011년 1월 1일 S기업 지분 100%를 100,000원에 취득하였다. (세무기준액 = 100,000원) 당기중 S기업의 이익으로 인하여 2011년말 P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S기업순자산 지분해당액은 120,000원이다.

따라서, 2011년말 P기업 연결재무제표상 S기업 지분의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000원(120,000–100,000)이었으나 P기업은 S기업 지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미래에 처

이 자료는 회원사 실무진의 IFRS 업무 이해를 돋기위해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에서 IFRS 적용실무를 정리하여 연재하는 것입니다.

의문사항 또는 연재 요청 주제가 있는 경우 본회 편집실 (02-2087-7141~2, plan02@klca.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능성 및 배당기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012년중 P기업은 S기업지분 30%를 60,000원의 대가를 받고 처분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계속 보유하면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P기업은 S기업의 잔여 70% 지분에 대한 처분기능성은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012년중 S기업의 순자산변동은 없었다고 가정하고, P기업의 법인세율은 20%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종속기업지분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P기업의 연결제무제표상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P기업은 S기업지분 처분시, 30% 지분의 처분에 대한 예측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발생원천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반영한다. 사례에서 미배당이익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차) 법인세비용	1,200 (*1)
(대) 이연법인세부채	1,200

(*1) 30% 지분에 해당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000 \times 30\% = 6,000$.
이연법인세부채는 $6,000 \times 20\% = 1,200$ 원

■ P기업의 S기업지분 30% 처분회계처리 (소유주와의 거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서 제 1110호 문단 23 및 문단 B96에 따라 수취한 대가와 소유지분의 변동액의 차이를 자본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차) 현금	60,000
(대) 비지배지분	36,000(*2)
자본잉여금	24,000

(*2) 처분된 종속기업 순자산지분 $120,000 \times 30\%$

■ S기업지분 30% 처분에 따른 법인세인식

(차) 이연법인세부채	1,200
자본잉여금	4,800 (*4)
(대) 미지급법인세	6,000 (*3)

(*3) 처분대가와 세무기준액의 차이에 대한 법인세
 $(60,000 - 100,000 \times 30\%) \times 20\%$
(*4) 자본거래에 따른 법인세효과 $24,000 \times 20\%$

취득원가와 순자산지분해당액의 차이에 대한 법인세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원천과 일관되게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또는 관련 자본항목으로 인식하고, 종속기업지분 처분대가와 순자산지분해당액과의 차이에 대한 법인세는 기준서 제1012호 문단 61A에 따라 자본에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이므로 자본항목으로 인식한다.

작성자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서계원 회계사 (02-3781-3137, kwseo@samil.com)

중단영업손익의 구분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르면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 (1)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2)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3)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이러한 중단사업이 있는 경우 기준서 제1105호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중단사업손익을 단일금액으로 표시해야 하고, 이 금액을 다음과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가)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 (나) 중단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다)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기준서 제1105호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중단영업 손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용의 배분이나 공통비의 처리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배분이나 표시가 적절히 되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중단영업손익을 구분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영업이 처분되면 더 이상 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수익이나 발생하지 않는 비용은 중단영업손익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단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러한 항목은 중단영업으로 배분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간접비에 대해서 배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결 그룹의 지배기업은 본점의 간접비를 공통 간접비로 보아 지배기업과 모든 종속기업에게 비례 배분한다. 그 중 한 종속기업의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단기간에 연결그룹의 공통 간접비는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공통 간접비가 매각 거래로 인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통 간접비 전체는 연결그룹의 손익계산서에서 계속영업손익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많은 매각거래에서 기업은 매각하지 않았더라면 회피 가능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매각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단영업손익의 일부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중단영업의 매각과 관련한 비용이 중단영업 손익으로 표시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1.

기업 A는 주요 사업 계열을 매각한다. 이러한 매각 거래로 인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

1. 기업 A는 거래처와 3년동안 원재료의 최소물량을 주문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해당 사업을 매각하면 해당 원재료를 주문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의 취득자는 다른 거래처와 거래하므로 해당 계약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

2. 기업 A는 매각하는 사업을 위해 특정 임원을 고용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기업 A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배력 변동 시 거래처에 일정 금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사업의 취득자는 이러한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해당 비용은 사업의 취득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기업 A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작성자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이수미 회계사 (02-3781-9548, smilee@samil.com)

미실현손익제거시 환산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는 연결그룹내 기업간 자산의 처분거래에 대해 결산일 시점 연결그룹내의 기업이 여전히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전액 제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연결그룹 내기업 간 자산의 처분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 자체의 손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서는 미실현손익의 제거시 적용해야 하는 환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US GAAP에서는 거래일의 환율이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실체간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음 사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1.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 한 지배기업은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x5년 중 미국 종속기업은 영국 지배기업이 £270,000의 원가로 계상하고 있던 원재료를 £300,000의 가격으로 매입하였고, 20x5년 기말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거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x5년 10월 31일 원재료를 £300,000의 가격으로 매입 (환율: £1=US\$1.56)

- 20x5년 12월 31일 현재 £300,000의 원재료를 여전히 보유(환율: £1=US\$1.52)
- 20x5년 평균환율(환율: £1=US\$1.55)

지배기업이 연결실체내의 기업간의 거래에서 인식한 £30,000 (£300,000-£270,000)의 이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를 환산할 때 결산일 현재 마감환율을 적용하므로 £30,000의 미실현손익의 제거 결과, 재고자산이 반드시 지배기업이 최초 계상했던 원가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일의 미국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에 포함된 원재료 금액은 US\$468,000이 되고, 결산 시 연결목적으로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재고자산은 결산일환율인 1.52를 적용하여 £307,895으로 재 환산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연결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은 아래와 같이 계상될 것이다.

£	
재고자산원가 US\$468,000에 환율 1.52를 적용하여 환산	307,895
미실현손익의 제거	(30,000)
연결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277,895

£7,895 (£277,895-£270,000)의 차이금액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을 결산일의 마감환율로 재환산함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이를 나타내며, £307,895에서 종속회사의 재고자산 취득금액인 £300,000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에는 20x5년 10월 31일에 영국의 지배기업이 미국의 종속기업으로부터 US\$421,200의 원가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US\$468,000의 금액으로 매입하고, 결산일 현재 지배기업이 여전히 해당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는 미실현손익 US\$46,800를 제거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US GAAP의 지침을 적용한다면 미

실현손익은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제거될 것이며, 연결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은 아래와 같이 계상될 것이다.

£	
재고자산원가 US\$468,000에 환율 1.56를 적용하여 환산	300,000
미실현손익 US\$46,800에 환율 1.56를 적용하여 환산 후 제거	(30,000)
연결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270,000

연결재무상태표상 계상된 재고자산금액은 연결그룹의 재고자산 최초 취득금액인 US\$421,200를 연결실체간 거래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원가로 표시된다 (US\$421,200/@1.56=£270,000). 이러한 방법은 US GAAP에서 규정하는 방법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하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영국의 지배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수익과 비용 항목을 환산할 때 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제거되어야 할 미실현손익의 금액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평균환율의 적용은 평균환율이 거래일의 환율에 근접할 경우 사용이 허용된다.

£	
재고자산원가 US\$468,000에 환율 1.56를 적용하여 환산	300,000
미실현손익 US\$46,800에 환율 1.55를 적용하여 환산 후 제거	(30,194)
연결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269,806

이 경우에는 연결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장부금액은 연결그룹의 실제 최초 취득원가와 같지 않게 될 것이다.

작성자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김진화 회계사 (02-709-4044, jhwakim@samil.com)





상장자료실

2014사업년도 12월 결산사 정기주주총회 개황분석	32
2014사업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실시 현황	36
IFRS 적용실무 해설 ㊱	40
기업공시 유의사항 ㊳	44

2014사업연도 12월 결산사 정기주주총회 개황분석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30개사(2015.4.1.자 현재) 중
'12월 결산사'는 총 710개사이며,

- 조사대상은 12월결산사 중 주주총회관련 사항을 공시한 국내법인 700개사(98.59%)임
(외국법인, 기업회생 및 신규재상장사 제외).

1. 개최일자 · 요일별 분포

개최월	주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총합계
2월	3주	-	1	-	-	-	1
	4주	-	-	1	-	3	4
2월 합계		-	1	1	-	3	5
3월	1주	-	-	-	-	2	2
	2주	-	2	1	-	58	61
	3주	4	2	1	13	252	272
	4주	5	10	9	18	274	316
	5주	17	27	-	-	-	44
3월 합계		26	41	11	31	586	695
총합계		26	42	12	31	589	700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기준
(2015.4.1.자)

2. 개최지역별 분포

(1) 전국 개최현황

지역	회사수	구성비
서울특별시	360	51.4
경기도	128	18.3
경상남도	41	5.9
부산광역시	27	3.9
충청남도	25	3.6
인천광역시	21	3.0
대구광역시	18	2.6
울산광역시	18	2.6
충청북도	14	2.0
광주광역시	10	1.4
경상북도	9	1.3
전라남도	8	1.1
대전광역시	7	1.0
전라북도	7	1.0
강원도	3	0.4
세종특별자치시	3	0.4
제주특별시	1	0.1
총합계	700	100.0

이 자료는 본회에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의 201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개황을 분석한 자료입
니다.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본회 기업법제팀 (02-2087-
71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현황

행정구분	회사수	구성비
강남구	64	17.8
중구	58	16.1
영등포구	50	13.9
서초구	48	13.3
종로구	36	10.0
마포구	19	5.3
송파구	16	4.4
용산구	13	3.6
동작구	9	2.5
구로구	8	2.2
강서구	8	2.2
서대문구	7	1.9
금천구	6	1.7
동대문구	4	1.1
강동구	4	1.1
성동구	4	1.1
관악구	2	0.6
양천구	2	0.6
종량구	1	0.3
도봉구	1	0.3
총합계	360	100.0

※ (1) 및 (2)는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기준
(2015.4.1.자)

3. 개최시간별 분포

개최시간	회사수	구성비
오전 8:00	10	1.4
오전 8:30	11	1.6
오전 9:00	311	44.4
오전 9:30	37	5.3
오전 10:00	249	35.6
오전 10:30	23	3.3
오전 11:00	42	6.0
오전 11:30	5	0.7
오후 1:30	4	0.6
오후 2:00	5	0.7
오후 2:20	1	0.1
오후 2:30	1	0.1
오후 3:00	1	0.1
총합계	700	100.0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기준
(2015.4.1.자)

4. 주주총회 상정의안 현황

상정의안	회사수	구성비
이사보수	673	77.6
재무제표 승인	616	76.0
이사선임	594	68.5
감사보수	404	46.6
정관변경	263	30.3
감사위원	197	22.7
감사선임	124	14.3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36	4.2
주식매수선택권	16	1.8
이익배당	11	1.3
이사해임	4	0.5
자본감소 승인의 건	0	0.0
합병계약 승인의 건	0	0.0
회사분할 승인	1	0.1
영업양수도 계약 승인	1	0.1
임원보수	1	0.1
주식액면분할	1	0.1
우리사주 매수선택권부여의 건	1	0.1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기준
(2015.4.1.자)

5. 이사회의 재무제표 및 배당의 승인

■ 재무제표 승인관련 정관규제현황

- 조사대상 12월결산사 700개사 중 재무제표 승인권한은 정관별로(2013사업년도 사업보고서 기준) ① 주주총회(380 개사, 54.3%), ② 이사회(320개사, 45.7%)로 분포

〈최근 12월결산사 '재무제표 결정기관'관련 정관기재 현황〉

기관구분	2015년		2014년		증감율 (%)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이사회	320	54.3	286	41.5	12.8
주주총회	380	45.7	103	58.5	-12.8
총합계	700	100.0	689	100.0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연도별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 기준

■ 재무제표등 이사회 승인현황

- 회사가 정관으로 재무제표의 승인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320개사 중 84개사(12.0%)가 재무제표관련 이사회 결의 이후 주주총회에서 보고함으로써 최종 확정함.

* 상법 제449조의2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2011년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일정요건(①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②외부감사의 적정의견)을 갖춘 회사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위의 회사 중 이익배당을 포함하여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확정한 회사는 61개사를 차지

〈 2015년 12월결산사 재무제표 결정기관 및 (현금)배당현황 〉

기관구분	무배당		유배당		총합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이사회	23	3.3	61	8.7	84	12.0
주주총회	194	27.7	422	60.3	616	88.0
총합계	217	31.0	483	69.0	700	100.0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014사업년도' 사업보고서 기준

- 한편, 배당결정기관별로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비해 높은 배당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평균 배당성향 및 평균 시기배당률 모두 이사회인 회사가 높게 나타나.

〈 상장법인 배당결정기관별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 비교 〉

(개사, %, 백만원)

재무제표 및 배당 결정기관	회사수	1사당 당기순익(A)*	1사당 현금배당금(B)	평균배당성향 (B/A×100)	평균 시기배당률**
이사회	61	25,498	7,023	27.54	1.92
주주총회	422	140,738	35,702	25.37	1.69
총계	483	126,184	32,080	25.42	1.72

* 1사당 당기순익(A)은 당기순손실 금액을 포함한 평균임.

** 회사별 배당수익률을 합하여 회사수로 나눈 수치임.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결과' 및 '2014사업년도' 사업보고서 기준(2015.4.1.자)

■ 이사회에 의한 배당결정의 긍정적 효과

- 현행 상법 제462조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당절차의 단축 및 재무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음.
- 한편, 최근의 기업현실에서는 투자 및 자본조달정책을 관리하는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비롯한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것 이 주주환원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6. 12월결산사 중 '주총소집결의' 공시 이후 '총회일' 간의 날짜격차현황

〈 12월결산사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시점 현황 〉

구분	2015년			2014년			구간별 증감율 (%P)
	회사수	구성비	누적비율	회사수	구성비	누적비율	
총회 6주전	58	8.3	8.3	14	2.0	2.0	6.30
총회 5주전	27	3.9	12.1	28	4.1	6.1	-0.20
총회 4주전	117	16.7	28.9	94	13.6	19.7	3.10
총회 3주전	201	28.7	57.6	217	31.5	51.2	-2.80
총회 2주전	297	42.4	100.0	336	48.8	100.0	-6.40

* 한국거래소(KIND) 공시서식 중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기준(연도별 1.1~3.31)

** 조사대상회사수 : 2014년(689개사), 2015년(700개사)

※ 비율 및 누적비율은 연도별 조사대상회사수 대비 비중임.

- 총회일 기준 6주전 또는 4주전에 주주총회 소집관련 수시공시가 직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까닭은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결의(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장소의 결정)' 외에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의 결산' 및 '의결권행사제도의 결정' 등을 동일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즉, 회사는 총회 6주전(또는 4주전)에 ① 직전 사업년도 재무제표의 결산관련 이사회 개최*와 ②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이른바 '섀도우보팅')의 신청 등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실무적 수요가 존재함.

* 「상법」상 회사는 총회 6주전 재무제표의 작성관련 결산이사회의 개최의무가 있고(상법 제447조 내지 제447조의3), 최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증선위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별도(개별) 재무제표는 총회 6주전, 연결재무제표는 총회 4주전에 제출의 무가 있음(외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도입여부를 결정(상법 제368조의4)하고, 총회 25일전까지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위탁계약 체결하여야 함(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9조). 예탁원 시스템을 통한 위임장 교부 및 위임행위의 전자화가 이루어지는 「전자위임장」을 도입할 경우도 동일한 절차 및 기한이 적용됨. 한편, 회사가 새도우보팅의 신청 및 신청을 위한 전제요건(①전자투표제도 도입, ②전주주 대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실시)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그 시점은 총회 6주전 또는 4주전에 주로 이루어짐.

7. 2015년 12월 결산사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정현황

정정사유	정정건수	구성비
① 기 공시한 내용을 정정한 회사	85	12.1
② 공시정정이 없었던 회사	615	87.9
	700	100.0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기준
(2015.4.1.자)

- 총회일 전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정정한 회사는 85개사로 12월 결산사 중 12.1%에 해당됨.

- 주요 정정사유로는 ① 임원 후보자의 확정(추가)(34.1%), ② 단순기재오류의 정정(23.5%), ③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에 따른 승인안건조정(16.5%) 등의 순이었음.

〈'주주총회 소집결의'의 주요 '정정'사유 (중복)〉

정정사유	정정건수	비중*
① 승인안건의 변경	49	57.65
임원 후보자 확정(추가)	29	34.12
임원 후보자 사퇴	9	10.59
임원의 구분변경	3	3.53
정관변경의 정정	2	2.35
기타 안건의 추가	4	4.71
기타 안건의 철회	2	2.35
② 단순기재오류 정정	20	23.53
③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에 따른 안건의 정정	14	16.47
④ 공시서식 보완(첨부서류 등)	8	9.41
⑤ 회의장소 또는 일시의 변경	4	4.71
⑥ 보고안건의 철회	1	1.18

*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를 정정한 85개사 대상 비중임.

상장

2014사업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실시 현황

1 조사 개요

- 분석대상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703개사*

*사업보고서제출일 기준, 상장폐지예정법인, 투자회사 및 외국법인 제외

2 현금배당 현황

- 현금배당 규모 확대

- ’14년 현금배당*을 실시한 상장법인 수는 전년 대비 26개사 (3.5%p) 증가한 총 483개사, 현금배당 총액은 3조 1,851 억원(25.87%) 증가한 15조 4,948억원으로 나타남.

- 보통주 및 우선주 배당 480개사, 우선주만 배당 3개사

*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한 현금배당

〈 전체 상장법인 현금배당 증감현황 〉

구분	2014년 배당(①)		2013년 배당(②)		증감율	
	법인수	배당총액	법인수	배당총액	법인수 (①-②)	배당총액 (①-②)/②)
보 통 주	480/ 703개사 (68.28%)	145,567 억원	456/ 701개사 (65.05%)	113,469 억원	3.2%p	28.3%
우 선 주	88/ 703개사 (12.52%)	9,381 억원	76/ 701개사 (10.84%)	9,628 억원	1.7%p	△2.57%
전 체	483/ 703개사	154,948 억원	457/ 701개사	123,097 억원	3.5%p	25.87%

- 2년 연속 현금배당 실시 : 433개사(703개사 중)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433개사, 현금배당 총액은 14조 2,5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943억원(23.3%) 증가

- 시가총액 상위사, 현금배당 확대

- 시가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상장회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기 대비 4조 2,450억원(△8.1%) 감소

이 자료는 본회에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2014사업연도 배당실시 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본회 회계제도팀(02-2087-71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규모는 2조 6,603억원(25.7%) 증가함.

- 이는 기업이 경영여건 악화 및 순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기업배당 확대기조와 주주를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2년 연속배당사 시가총액 규모별 배당현황 〉

시가총액 규모	배당사 (개사)	당기순이익(억원)				현금배당금(억원)				배당성향(%)	
		2014	2013	증감	증감률(%)	2014	2013	증감	증감률(%)	2013	2014
1조 초과	119	481,803	524,253	△42,450	△8.1	130,177	103,573	26,603	25.7	19.8	27.0
2,500억 이상 ~ 1조 미만	118	41,947	26,058	15,889	61.0	8,030	7,697	333	4.3	29.5	19.1
1,000억 이상 ~ 2,500억 미만	105	13,878	15,894	△2,016	△12.7	3,182	3,138	45	1.4	19.7	22.9
500억 이상 ~ 1,000억 미만	51	2,752	2,535	217	8.5	892	932	△40	△4.3	36.8	32.4
250억이상 ~ 500억 미만	35	86	240	△154	△64.0	282	282	0	△0.1	117.4	326.3
250억미만	5	△60	△47	△13	28.5	21	20	2	8.3	-	-
전 체	433	540,405	568,933	△28,528	△5.0	142,583	115,641	26,943	23.3	20.3	26.4

*보통주 현금배당기준, 배당률= 보통주 주당 현금배당금 / 주당 액면금액

■ 차등배당

- 보통주 현금배당과 관련하여 차등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총 15개사로 전체 중 3.13%를 차지

〈 차등배당 현황 〉

연도	보통주 배당 기업수	차등배당 기업수	차등배당 비중(%)	소액주주 배당률(액면,%)			대주주 배당률(액면,%)		
				최소값	평균	최대값	최소값	평균	최대값
2014년	480개사	15개사	3.13	0.20	17.16	140.00	0.00	8.11	70.00
2013년	456개사	13개사	2.84	0.20	17.00	80.00	0.00	8.58	40.00

*보통주 현금배당기준, 배당률= 보통주 주당 현금배당금 / 주당 액면금액

3 주식배당(보통주)

■ 2014년 보통주 주식배당은 총 15개사, 172.9억원 실시

-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703개사 중 2.13%를 차지, 전년도 대비 0.28%p 증가(전년도 : 701개사 중 13개사, 1.85%)

* 주식배당사 : 국제약품공업, 동일고무벨트, 동일방직, 명문제약, 무학, 미래에셋증권, 부광약품, 부산주공, 선창산업, 신풍제약, 에이블씨엔씨, DRB동일, S&T홀딩스, SK가스, TCC동양

- 주식배당을 실시한 15개사 중 현금배당을 병행한 14개사(무학 외)의 평균 주식배당액*은 7.2억원 증가한 반면, 현금배당액*은 13.9억원 감소함.

* 보통주 배당금 기준

〈 주식-현금배당 병행사 배당 증감 〉

구분	주식배당		현금배당		증감(증감율)	
	배당총액(억원)	평균배당금(억원)	배당총액(억원)	평균배당금(억원)	주식배당	현금배당
2014년	172.94	12.35	466.14	33.30	7.21억 (140%)	△13.91억 (△29.5%)
2013년	61.68	5.14	566.52	47.21		

*현금-주식 병행 배당사 : 2013년 12개사, 2014년 14개사(무학 외), 보통주 배당금 기준

4 업종별 · 시가총액 규모별 · 당기순이익 규모별 배당현황

〈 업종별 배당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

구분	2014년						2013년					
	대상사수	배당사수	순이익	현금배당금	배당성향	시가배당률	대상사수	배당사수	순이익	현금배당금	배당성향	시가배당률
구분	39	21	3,927	2,471	62.91	2.21	40	20	7,857	2,262	28.79	2.35
비금속	20	15	2,862	575	20.10	1.76	20	12	1,666	431	25.89	2.43
섬유의복	25	15	2,814	450	16.00	1.29	23	15	2,770	420	15.18	1.83
운수장비	45	34	105,829	17,377	16.42	1.77	47	39	120,596	14,637	12.14	2.15
음식료품	36	26	7,712	2,547	33.02	1.31	36	25	9,942	2,166	21.79	1.19
의료정밀	4	3	291	83	28.55	1.40	4	2	226	45	19.99	1.55
의약품	35	25	4,260	1,109	26.03	1.13	36	27	6,889	987	14.32	1.20
전기전자	54	30	200,091	37,282	18.63	1.36	56	28	184,575	24,626	13.34	1.47
종이목재	22	12	526	341	64.74	2.84	23	14	1,526	504	33.04	2.77
철강금속	42	30	28,284	9,679	34.22	1.80	42	31	46,596	9,077	19.48	1.92
화학	90	73	35,683	10,906	30.56	1.91	92	72	41,054	11,839	28.84	2.12
제조업	423	290	400,419	87,253	21.79	1.72	431	289	428,998	71,123	16.58	1.92
건설	29	11	793	2,463	310.68	1.48	32	9	4,869	1,405	28.86	1.99
서비스	106	79	61,213	15,438	25.22	1.67	97	73	50,482	17,366	34.40	1.98
운수창고	21	13	7,304	963	13.18	1.13	21	12	3,112	723	23.22	1.24
유통	55	37	28,365	5,214	18.38	1.32	55	32	27,429	3,899	14.21	1.18
전기기기	11	11	14,105	4,111	29.14	2.11	11	10	5,963	1,419	23.80	2.55
통신	3	2	12,726	7,323	57.54	2.41	3	3	7,954	9,270	116.55	2.66
비제조업	231	155	124,709	35,627	28.57	1.56	225	141	100,495	34,223	34.05	1.77
금융업	49	38	84,340	32,068	38.02	2.34	45	27	45,030	17,751	39.42	1.62
총합계	703	483	609,469	154,948	25.42	1.72	701	457	574,523	123,097	21.43	1.86

*현금배당금 : 보통주 및 우선주 현금배당금 총액

**시가배당률 : 보통주 현금 기준

〈 시가총액 규모별 배당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

시가총액 규모	2014년							2013년						
	대상사수	배당사수	순이익	현금배당금	배당성향	액면배당률	시가배당률	대상사수	배당사수	순이익	현금배당금	배당성향	액면배당률	시가배당률
1조 초과	158	135	547,382	140,890	25.74	97.24	1.38	142	120	528,707	109,932	20.79	84.44	1.17
2,500억 이상~1조 미만	158	130	43,690	9,111	20.85	32.95	1.47	147	109	25,980	8,218	31.63	33.82	1.60
1,000억 이상~2,500억 미만	162	113	15,025	3,649	24.28	22.36	1.91	154	112	15,951	3,374	21.15	21.55	1.97
500억 이상~1,000억 미만	114	58	3,051	966	31.66	19.52	2.35	120	63	3,459	1,129	32.64	17.57	2.65
250억 이상~500억 미만	86	40	363	307	84.48	8.68	2.18	93	46	436	398	91.31	11.07	2.69
250억 미만	25	7	-43	26	-	7.71	1.81	45	7	-10	47	-	12.71	3.23
전체	703	483	609,469	154,948	25.42	44.45	1.72	701	457	574,523	123,097	21.43	39.25	1.86

*액면, 시가배당률 : 보통주 현금 기준

〈 당기순이익 규모별 배당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

시가총액 규모	2014년							2013년						
	대상사수	배당사수	순이익	현금배당금	배당성향	액면배당률	시가배당률	대상사수	배당사수	순이익	현금배당금	배당성향	액면배당률	시가배당률
1,000억 초과	85	74	547,049	126,616	23.15	142.18	1.71	77	73	527,981	98,172	18.59	116.69	1.43
500억 이상~1,000억 미만	49	43	30,579	8,729	28.55	46.16	1.31	43	37	26,255	6,717	25.58	38.02	1.37
100억 이상~500억 미만	186	167	39,414	11,874	30.12	34.52	1.72	180	161	35,368	9,197	26.00	32.65	1.88
50억 이상~100억 미만	89	74	5,334	2,101	39.40	22.56	1.85	78	61	4,545	1,586	34.90	18.89	1.99
50억 미만	126	90	2,168	1,884	86.88	13.47	1.92	132	82	2,101	1,295	61.65	13.82	2.48
당기순손실	168	35	-15,076	3,743	-	9.06	1.40	191	43	-21,727	6,131	-	10.96	1.55
전체	703	483	609,469	154,948	25.42	44.45	1.72	701	457	574,523	123,097	21.43	39.25	1.86

*액면, 시가배당률 : 보통주 현금 기준

5 배당 승인 주체별 배당현황

-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회사*의 배당성향 및 시가배당률이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한 회사보다 높음.

* 배당실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재무제표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나, ①외부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고 ②감사(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 승인 등(이익배당의 결정 포함)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할 수 있음(상법 제449조의2).

-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상장회사는 유배당사 중 61개사(12.63%)로 4,284억원의 배당을 실시
 -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경우보다 배당성향은 2.17%p, 시가배당률은 0.2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정책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방식이 주주환원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유배당사 배당 결정기관별 배당현황 〉

구분	유배당 법인수	당기순이익(①)	현금배당금(②)	배당성향 (②/①*100)	시가배당률(평균)
이사회	61개사(12.63%)	15,554억원	4,284억원	27.54%	1.92%
주주총회	422개사(87.37%)	593,914억원	150,664억원	25.37%	1.69%
합계	483개사	609,469억원	154,948억원	25.42%	1.72%

상장

IFRS 적용실무 해설

85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지분 처분 시 법인세 회계처리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 또는 납부할 법인세금액을 일정 요건 및 예외조항을 고려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등 투자지분의 경우 종속기업 등의 미배당이익의 증가로 지배회사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인 세무기준액을 초과하여 일시적차이가 발생하고, 또 손상으로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감소하거나 해외 종속기업의 통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일시적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종속기업 등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지배기업 등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기를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지분에 대한 일시적차이는 처분 또는 배당을 통하여 소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이연법인세는 이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를 반영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종속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 지분 일부 처분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 지분의 감소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거래로 회계처리되므로 전부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미배당이익의 증가에 따른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는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1.

P기업은 2011년 1월 1일 S기업 지분 100%를 100,000원에 취득하였다. (세무기준액 = 100,000원) 당기중 S기업의 이익으로 인하여 2011년말 P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S기업순자산 지분해당액은 120,000원이다.

따라서, 2011년말 P기업 연결재무제표상 S기업 지분의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000원(120,000–100,000)이었으나 P기업은 S기업 지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미래에 처

이 자료는 회원사 실무진의 IFRS 업무 이해를 돋기위해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에서 IFRS 적용실무를 정리하여 연재하는 것입니다.

의문사항 또는 연재 요청 주제가 있는 경우 본회 편집실 (02-2087-7141~2, plan02@klca.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능성 및 배당기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012년중 P기업은 S기업지분 30%를 60,000원의 대가를 받고 처분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계속 보유하면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P기업은 S기업의 잔여 70% 지분에 대한 처분기능성은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012년중 S기업의 순자산변동은 없었다고 가정하고, P기업의 법인세율은 20%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종속기업지분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P기업의 연결제무제표상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P기업은 S기업지분 처분시, 30% 지분의 처분에 대한 예측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발생원천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반영한다. 사례에서 미배당이익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차) 법인세비용	1,200 (*1)
(대) 이연법인세부채	1,200

(*1) 30% 지분에 해당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000 \times 30\% = 6,000$.
이연법인세부채는 $6,000 \times 20\% = 1,200$ 원

■ P기업의 S기업지분 30% 처분회계처리 (소유주와의 거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서 제 1110호 문단 23 및 문단 B96에 따라 수취한 대가와 소유지분의 변동액의 차이를 자본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차) 현금	60,000
(대) 비지배지분	36,000(*2)
자본잉여금	24,000

(*2) 처분된 종속기업 순자산지분 $120,000 \times 30\%$

■ S기업지분 30% 처분에 따른 법인세인식

(차) 이연법인세부채	1,200
자본잉여금	4,800 (*4)
(대) 미지급법인세	6,000 (*3)

(*3) 처분대가와 세무기준액의 차이에 대한 법인세
 $(60,000 - 100,000 \times 30\%) \times 20\%$

(*4) 자본거래에 따른 법인세효과 $24,000 \times 20\%$

취득원가와 순자산지분해당액의 차이에 대한 법인세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원천과 일관되게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또는 관련 자본항목으로 인식하고, 종속기업지분 처분대가와 순자산지분해당액과의 차이에 대한 법인세는 기준서 제1012호 문단 61A에 따라 자본에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이므로 자본항목으로 인식한다.

작성자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서계원 회계사 (02-3781-3137, kwseo@samil.com)

중단영업손익의 구분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르면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 (1)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2)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3)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이러한 중단사업이 있는 경우 기준서 제1105호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중단사업손익을 단일금액으로 표시해야 하고, 이 금액을 다음과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가)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 (나) 중단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다)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기준서 제1105호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중단영업 손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용의 배분이나 공통비의 처리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배분이나 표시가 적절히 되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중단영업손익을 구분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영업이 처분되면 더 이상 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수익이나 발생하지 않는 비용은 중단영업손익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단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러한 항목은 중단영업으로 배분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간접비에 대해서 배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결 그룹의 지배기업은 본점의 간접비를 공통 간접비로 보아 지배기업과 모든 종속기업에게 비례 배분한다. 그 중 한 종속기업의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단기간에 연결그룹의 공통 간접비는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공통 간접비가 매각 거래로 인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통 간접비 전체는 연결그룹의 손익계산서에서 계속영업손익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많은 매각거래에서 기업은 매각하지 않았더라면 회피 가능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매각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단영업손익의 일부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중단영업의 매각과 관련한 비용이 중단영업 손익으로 표시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1.

기업 A는 주요 사업 계열을 매각한다. 이러한 매각 거래로 인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

1. 기업 A는 거래처와 3년동안 원재료의 최소물량을 주문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해당 사업을 매각하면 해당 원재료를 주문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의 취득자는 다른 거래처와 거래하므로 해당 계약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

2. 기업 A는 매각하는 사업을 위해 특정 임원을 고용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기업 A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배력 변동 시 거래처에 일정 금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사업의 취득자는 이러한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해당 비용은 사업의 취득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기업 A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작성자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이수미 회계사 (02-3781-9548, smilee@samil.com)

미실현손익제거시 환산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는 연결그룹내 기업간 자산의 처분거래에 대해 결산일 시점 연결그룹내의 기업이 여전히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전액 제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연결그룹 내기업 간 자산의 처분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 자체의 손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서는 미실현손익의 제거시 적용해야 하는 환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US GAAP에서는 거래일의 환율이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실체간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음 사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1.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 한 지배기업은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x5년 중 미국 종속기업은 영국 지배기업이 £270,000의 원가로 계상하고 있던 원재료를 £300,000의 가격으로 매입하였고, 20x5년 기말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거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x5년 10월 31일 원재료를 £300,000의 가격으로 매입 (환율: £1=US\$1.56)

- 20x5년 12월 31일 현재 £300,000의 원재료를 여전히 보유(환율: £1=US\$1.52)
- 20x5년 평균환율(환율: £1=US\$1.55)

지배기업이 연결실체내의 기업간의 거래에서 인식한 £30,000 (£300,000-£270,000)의 이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를 환산할 때 결산일 현재 마감환율을 적용하므로 £30,000의 미실현손익의 제거 결과, 재고자산이 반드시 지배기업이 최초 계상했던 원가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일의 미국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에 포함된 원재료 금액은 US\$468,000이 되고, 결산 시 연결목적으로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재고자산은 결산일환율인 1.52를 적용하여 £307,895으로 재 환산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연결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은 아래와 같이 계상될 것이다.

£	
재고자산원가 US\$468,000에 환율 1.52를 적용하여 환산	307,895
미실현손익의 제거	(30,000)
연결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277,895

£7,895 (£277,895-£270,000)의 차이금액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을 결산일의 마감환율로 재환산함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이를 나타내며, £307,895에서 종속회사의 재고자산 취득금액인 £300,000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에는 20x5년 10월 31일에 영국의 지배기업이 미국의 종속기업으로부터 US\$421,200의 원가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US\$468,000의 금액으로 매입하고, 결산일 현재 지배기업이 여전히 해당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는 미실현손익 US\$46,800를 제거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US GAAP의 지침을 적용한다면 미

실현손익은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제거될 것이며, 연결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은 아래와 같이 계상될 것이다.

£	
재고자산원가 US\$468,000에 환율 1.56를 적용하여 환산	300,000
미실현손익 US\$46,800에 환율 1.56를 적용하여 환산 후 제거	(30,000)
연결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270,000

연결재무상태표상 계상된 재고자산금액은 연결그룹의 재고자산 최초 취득금액인 US\$421,200를 연결실체간 거래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원가로 표시된다 (US\$421,200/@1.56=£270,000). 이러한 방법은 US GAAP에서 규정하는 방법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하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영국의 지배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수익과 비용 항목을 환산할 때 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제거되어야 할 미실현손익의 금액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평균환율의 적용은 평균환율이 거래일의 환율에 근접할 경우 사용이 허용된다.

£	
재고자산원가 US\$468,000에 환율 1.56를 적용하여 환산	300,000
미실현손익 US\$46,800에 환율 1.55를 적용하여 환산 후 제거	(30,194)
연결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269,806

이 경우에는 연결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장부금액은 연결그룹의 실제 최초 취득원가와 같지 않게 될 것이다.

작성자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김진화 회계사 (02-709-4044, jhwakim@samil.com)



기업공시 유의사항 ⑧⓪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관련 공시안내

1 ➔ 자기주식취득의 의의

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종래 자기주식취득은 ①채권자보호, ②주주평등, ③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이유로 엄격하게 제한해왔으나, 최근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자기주식취득 제한이 완화됨

※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규정

1. 상법 및 동시행령
2. 자본시장법(이하 법) 및 동시행령(이하 영)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적용, 상법에 우선)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2 ➔ 자기주식취득 관련 제한

(1) 취득방법에 대한 제한

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취득(법§165조의3①1, 상법§341①)

※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i)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 ii)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 iii)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은 규정 §5-11①을 참조

②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법§165조의3①2)

③ 특정목적에 따른 취득(상법§341조의2)

* 특정목적은 합병, 영업전부의 양수, 권리실행, 단주처리,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더라도 취득 가능

이 자료는 회원사 실무진의 공시업무 이해를 돋기위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에서 공시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연재하는 것입니다.

의문사항 또는 연재 요청 주제가 있는 경우 본회 편집실(02-2087-7141~2, plan02@klca.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제한

- ① 이사회 결의(법§165조의3③, 영§176조의2①, 규정§5-1, §5-2)
- ② 취득·처분 기간 제한(영§176조의2②,③, 규정§5-3, §5-4)
- ③ 장내취득의 경우 주문방법과 관련된 제한(규정§5-5)

* 이 경우에도 각각의 행위가 공시대상이 된다면 그 자체에 대한 공시는 필요함. 예를들어 합병 등이 있는 경우 합병결정 자체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는 제출해야함

-그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기주식 처분결정이 있는 것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2) 취득·처분 결과보고서 등(규정 §5-8①, §5-9①, §5-10)

① 주권상장법인

② 자본시장법 §165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취득(처분)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취득(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

③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를 제출

④ 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이사회결의를 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한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제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관련 공시〉

신고서의 구분	제출대상법인	제출사유 및 기한
주요사항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의 체결·해지)에 관한 결의가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		자본시장법 §165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완료한 때 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한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	주권 상장법인 (외국법인 등은 제외)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3월이 경과한 때 그 날부터 5일 이내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때에는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때에는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

(2) 기타 제한

- ① 이사회 결의(상법§342, 영§176조의2①, 규정§5-1, §5-2)
- ② 취득·처분 기간 제한(영§176조의2②,③, 규정§5-9(§5-4준용))
 - *②-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5년이내 처분해야함
(법 §165조의5④, 영§176조의7④)
- ③ 장내처분의 경우 주문방법과 관련된 제한(규정 §5-9(§5-5준용))

4 ▶ 자기주식취득·처분 관련 공시

(1) 주요사항 보고서(법§161① 8.)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②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 포함) 또는 처분(신탁계약의 해지 포함)할 것을 결의'한 때 그 익일까지 제출
 - 특정목적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상법§341의2)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자기주식공시 관련 FAQ

1. 자기주식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의 정정 가능 여부

-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사항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사의 편의에 따라 쉽게 정정할 사항은 아님

– 따라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서상 기재한 취득기간, 취득방법, 수량 등을 정정할 수 없음

2. 자기주식의 질권설정 관련

-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고, 담보제공은 소유권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단,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므로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이사회결의와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함

3. 자기주식취득 이행 관련

- 현행법상 자기주식 취득신고는 취득수량과 취득금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신고수량을 판단기준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후 추가가 상승한 경우,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취득신고수량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 다만,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

4. 신탁계약 내에서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시 여부

- 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대해서 주요사항보고서 및 취득상황보고서(해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시의무 없음

※ 자세한 내용은 ①기업공시 실무안내, ②기업공시 실무FAQ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공시업무에서 다운로드 가능) 

검사인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김교창

본회 상담역
법무법인 정률
고문변호사



Q

당 회사의 간부가 부정을 저질러 기소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자 당 회사의 소수주주가 회계장부를 열람·등사 및 조사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1) 검사인 선임, (2)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등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습니다. 당 회사가 이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지요?

A

1. 소수주주에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상법 제467조, 제542조의6). 이 검사인 선임청구에는 주주총회의 결과를 요하지 않습니다. 소수주주가 바로 법원에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하면, 검사인이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뒤 법원이 이 보고서를 보고 필요하면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합니다. 그러므로 검사인의 선임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삼아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것은 귀 회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2. 다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소수주주에게는 회계장부를 열람·등사 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상법 제467조, 제542조의6). 열람·등사 하여 살펴본 후 위와 같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부정이 드러나면 회사의 임원들을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542조의6). 그러므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하여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것 역시 귀 회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직원선물의 매입세액공제 및 간주공급 해당여부

정창모

본회 상담역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Q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회사설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외부에서 일인당 오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기념품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업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때 간주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A

우선 기념품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장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한 기념품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1399, 2009.09.29.). 즉, 본 사례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기념품의 매입세액은 사업관련성을 인정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간주공급 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제4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기념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0-1(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여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업자가 기념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즉, 개인적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할 기념품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기념품을 지급할 때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불편함만 있을 뿐 매입세액의 공제에 따른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수익인식 기준서(IFRS 15) 경과규정의 개정

김성남

본회 상담역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Q

수익인식 기준서인 IFRS 15(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의 시행일(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개시일)전에 계약변경이 있었던 경우, IFRS 15의 완전소급법 또는 수정소급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더라도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IASB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A

IASB가 발표한 IFRS 15에 따르면 기업은 IAS 8(회계정책, 회계주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하는 각 과거보고기간에 IFRS 15를 소급적용(완전소급법)하거나, IFRS 15 적용의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12월 31일이 회계연도말인 기업의 경우에 2017년 1월 1일)에 일괄 소급(수정소급법)하여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ASB는 과거의 계약변경을 완전소급법이나 수정소급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기업이 겪는 어려움(특히 여러 차례 계약변경이 있었던 장기계약의 경우)을 고려하여 IFRS 15의 경과규정에 실무적 간편법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계약일부터 계약변경수정일(위 두 가지 방법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보고기간의 개시일)사이에 계약변경이 있었던 경우, 각각의 계약변경 효과를 평가하지 않고 실제결과를 활용하여 계약변경수정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이행된 수행의무와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의 역사적 독립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각각에 일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IASB는 완전소급법을 적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보고기간의 개시일 현재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IFRS 15를 소급적용하도록 실무적 간편법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IFRS 15의 최초적용일 전에 현행기준서에 따라 재화와 용역 전부를 제공하였다 면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2015년 4월 28일 IASB는 IFRS 15의 시행일을 1년 늦추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문제를 다루는 공개조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ASB는 IFRS 15의 여러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조안을 준비중이었다는 점과 미국 수익인식 기준서의 시행일과 IFRS 15의 시행일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내용은 필자의 사견이며 본회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유상증자시 실권주처리 실무



정문호 전문위원

Tel. 02-2087-7159
jmh@klca.or.kr

상장회사의 유상증자는 자본시장을 통한 가장 전형적이고 유효한 자금조달수단이다. 요즈음 유상증자가 빈번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실무자입장에서는 회사의 자본조달정책에 따라 수시로 활용될 수 있는 유상증자제도의 내용, 특히 최근 변경내용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이 2013. 4. 30. 국회를 통과하여, 5. 28. 공포되었고, 8. 29.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상증자관련 개정자본시장법의 유상증자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장회사의 유상증자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실권주는 미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 허용,

② 신주인수권 증서 발행 의무화, ③ 우리사주조합과 주주의 동시청약 기회마련, ④ 일반공모증자의 유형 구체화 등이다.

이러한 개정내용이 상장회사 직접금융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의 증자 과정 또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주주의 손해를 야기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래 많은 법적 논쟁이 되었던 실권주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정자본시장법에 의해 변경된 실권주처리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본고는 장근영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주요 쟁점'(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연수 자료)와 이승희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이주용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실권주의 처리와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에 관한 소고' (BFL 61호)를 참조하여 소개한 것임

1. 실권주의 개념

회사가 신주 발행을 위해서는 먼저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청약일 2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실권예고부최고). 이러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약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러한 신주인수권이 소멸된 주식을 실권주(失權株)라고 한다(상법 제419조). 한편 개정 자본시장법은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주식을 실권주라고 정의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2. 실권주의 발생

신주인수권자가 실권예고부최고가 있음에도 청약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아 신주인수권을 상실하는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며 (상법 제419조 제3항), 또한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실권주가 발생한다(상법 제423조 제2항).

이론적으로는 실권주의 발생 여부 및 그 수량은 납입기일에 확정되지만, 실무상 유상증자 청약시 청약서와 청약증거금을 동시에 받는 관행에 따라 사실상 청약일에 확정되고 있다.

즉 증자실무에서는 실권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청약과 동시에 납입증자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받아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충당하므로, 실권주는 주주가 청약을 포기한 청약일에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3. 종전의 실권주 처리방법과 문제점

(1) 상법상 실권주 처리방법

주주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의 경우 실권주 처리방법에 관해 상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실권주의 처리는 유상증자의 일부과정으로 이사회 의 권한으로 본다. 따라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부분납입할 수도 있다(부분납입증자).

〈관련 판례〉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15. 판결 2010다49380).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으나 주주 중 일부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미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 상태이므로, 그 후 포기된 주식의 배정에는 상법 제418조 제1항이 다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회사 정관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리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10.23. 2008마994 결정/ 2008마995 처분).

(2) 실권주 제3자배정 문제점

회사가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다면 기존주주의 지배권 희석화가 발생하고 발행가액에 따라서는 주식의 경제적 가치의 희석화도 발생한다.

즉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발행가액이 현저히 저가로 이루어진 경우에 실권주를 동일한 발행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다면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구주와 신주가 혼합됨으로 인해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발생되어 주가가 종전 가액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신주를 인수한 제3자에게 종전주주가 보유하던 주식가치의 일부가 이전될 수 있다.

판례는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으로써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실권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희석되어 기존 주주들의 부(富)가 신주주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기존 주주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3) 실권주를 통한 우회적 제3자배정 증자의 문제점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의 경우는 기존 주주의 권리가 일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정관에 목적, 대상(제3자의 범위), 한도 등을 특정하여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발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시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사 등이 이를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가 따른다(상법 제424조의2, 제516조, 제516조의10, 형법 제355조 등).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주주배정형식의 신주 발행을 추진한 후 기존 주주로 하여금 실권토록 한후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절차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실권주를 통한 우회적 제3자배정 증자가 활용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상의 제한으로 인해 회사의 지배주주가 편법상 속·증여나 경영권확보 등을 위해 지배주주 본인의 자녀 또는 특수관계인 등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주주배정방식의 신주 발행을 추진한 후 의도적으로 신주를 실권시키고 해당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배주주의 자녀 또는 특수관계인 등 제3자에게 실권주

를 배정함으로써 실권주제도를 활용해온 사례가 있다.

이같이 회사가 실권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실권주 처리방식에 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사회결의를 통해 간단하게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제도상 결핍에서 기인된다 하겠다.

판례는 주주에게 일단 신주인수의 기회를 준 뒤에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면 저가로 발행된 신주라도 동일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울러 판례는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일단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그 실권주를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해 배정하는 것 역시 주주배정방식이라는 입장이며, 실권주의 배정도 원래의 발행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해야 하며 실권주를 제3자에 대해 배정하면서 발행가액을 변경하는 것은 제3자 배정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관련 판례〉

- ① 실권주 등을 제3자에게 배정한 결과 회사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이 경우 신주 등의 발행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그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기존 주주들의 부가 새로이 주주가 된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기존 주주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다.
- ② 주주가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 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여지가 없다.
- ③ 같은 기회에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등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하더라도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실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5.29. 전원합의체 판결 2007도4949).

4. 개정법에 의한 실권주처리

(1) 원칙적 발행 철회

실권주처리를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권주처리제도는 ①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②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한 상법상 제한을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점, ③ 실권주의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자본시장법상 공모증자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와 같은 실권주 처리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실권주 처리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즉,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을 철회해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2) 예외적 발행 허용과 그 요건

예외적으로 실권주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될 우려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발행을 철회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단서).

즉 실권주 처리는 이사회의 전속적 권한이어서 지극히 낮은 할인율을 이용한 부당한 경영권상 속,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제공 수단으로 실권주를 활용하는 부작용이 지적됨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제3자에 대한 특혜소지가 적은 경우에만 실권주 발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실권주가 부정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이 방지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예외사유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ii)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초과청약’)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음),

(iii)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임.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격(금융위 고시가격, 주주배정방식 : 100분의 40, 제3자배정방식 : 100분의 10, 일반공모방식 : 100분의 3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 이상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발행가액의 적정성을 위해 시가발행인 경우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며,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주주의 지분권 희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i)은 발행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인수인과 잔액인수(standby underwriting) 방식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ii)는 신주발행을 추진하면서 실권에 대비한 장치(특정주주와의 실권주 인수 · 납입 합의)를 미리 해둠으로써 그 합의에 따라 회사가 원래 계획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였기 때문에(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신주인수권증서의 양수도가 일어난 이후에도 실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조항에 의하여 특정 주주가 인수할 수 있는 실권주의 규모는 주주들의 지분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의무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당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는 이를 양도할 수 있음)를 발행할 수 있었는바, 거래 존속기한이 짧고(발행가격 결정시부터 청약시까지), 가격(시가와 할인가의 차액)이 불안정하여 활용도가 미미하고, 아울러 신주인수권 증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증서 양도에 의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유상증자시 자금부족 등으로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주주가 증자참여 포기에 대한 인한 재산적 손실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도록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를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게 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화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하고 회사는 실권주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이 원활해지도록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를 의무발행하도록 하고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2개 이상의 증권회사를 중개회사로 지정토록 하였다.

즉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방법으로서 시행령 제176조의8 제4항은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제1호)과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장회사에서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과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주주는 신주발행조건이 유리 또는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으로 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의 양도로써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다.

〈참고〉 개정자본시장법에 따른 유상증자시 유의사항

유상증자시 개정 자본시장법의 증자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고 동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개정법에 의한 변경된 실무처리를 요약하면, 일반적인 주주배정 증자방식일 경우 이사회 결의로 ①우리사주조합과 주주의 동시청약 여부 ②신주인수권증서 발행 · 유통방법 ③주주의 초과청약 등 실권주 처리방법을 정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과 주주의 동시청약 여부와 관련하여는 우리사주조합과 기존주주는 같은 날에 청약할 수 있고 이 경우 ①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20%를 우선배정하고 ②주주에게는 발행예정주식 중 우리사주조합 배정분(20%)을 제외한 80%를 배정하고 배정받은 주식수의 20%이내에서 초과청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 유통방법과 관련하여는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고, 증서의 유통방법으로 i)한국거래소 상장 ii)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를 중개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회사는 신주배정비율 통지와 함께 신주인수권 증서에 당해 주주에게 배정되는 주식의 수와 초과청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각 주주의 계좌에 입고해야 할 것이다

주주의 초과청약 등 실권주 처리방법과 관련하여는 발행회사는 조합 및 구주주의 실권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① 발행하지 아니함 ②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초과청약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 ③ 사전에 투자매매업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실권주 전부를 인수시키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현금흐름표의 이해와 활용



신장훈 전무
KPMG 삼정회계법인
Tel. 02-2112-0808
jhshin@kr.kpmg.com

목차	
1	K-IFRS 실무해설을 시작하며
2	K-IFRS 도입에 따른 핵심적 변화요소
3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4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1)
5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2)
6	K-IFRS의 특징적 회계처리(1)
7	K-IFRS의 특징적 회계처리(2)
8	K-IFRS 주석정보의 활용(1)
9	K-IFRS 주석정보의 활용(2)
10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K-IFRS 재무정보 분석시 고려사항
11	현금흐름표의 이해와 활용
12	K-IFRS 도입과 연계된 공시제도의 변화

2015년 3월 금융연구원의 '최근 기업부문 건전성 분석을 통한 금융 안정성 평가와 시사점'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상장회사가 2010년 93개사에서 2013년 177개사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국내 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이 다시 한번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K-IFRS로 변화되었지만, 발생주의라는 재무제표 작성의 근간에는 중요한 변화가 없으므로,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창출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의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현금흐름표에 대한 이해와 함께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금흐름표의 중요성

근본적으로 기업경영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며,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와 주주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발생주의의 원칙하에 작성된 손익계산서는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다수의 회계처리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창출능력을 표시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유동성위기 심화되었던 1990년대 후반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1. 1990년대 후반 부도기업의 경영분석지표와 현금흐름 정보〉

구분	부도기업			산업평균
	1994	1995	1996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131.02	129.64	117.01	101.42
당좌비율	83.41	80.84	74.69	63.70
부채비율	352.40	346.02	444.18	353.85
수익성비율(회)				
매출액순이익률	1.38	0.72	△4.05	1.15
총자본경상이익률	1.93	1.22	△2.30	1.66
자기자본순이익률	4.10	2.01	△3.77	3.79
활동성비율(회)				
총자본회전율	0.79	0.76	0.77	1.07
매출채권회전율	4.25	3.84	3.81	6.14
재고자산회전율	7.12	6.57	6.40	6.7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15.10	15.60	12.27	19.66
총자산증가율	20.30	16.41	11.88	17.85

현금흐름	1994	1995	1996
영업활동	-	-	-
투자활동	-	-	-
재무활동	+	+	+
순현금	+	-	-

표1에서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유동성 위기의 상황에서 실제로 부도가 발생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및 성장성 등 전통 적재무비율들은 산업평균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도가 난 기업들의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이 모두(-)를 나타내었으며, 재

무활동(차입)에서만 현금흐름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외부차입등으로 버텨낸 기업들은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부도가 난 상황을 현금흐름표가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금흐름표는 실질적인 현금의 조달여량과 경로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이용자들이 기업의 자금 흐름경로를 이해하고 채무의 상환과 배당금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의 이해

현금흐름표는 직접법 또는 간접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간접법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다. 현금흐름표는 사업기간동안 기업이 보유한 현금의 변동을 영업, 투자 및 재무의 3가지 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표2. 현금흐름표의 구성〉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u>X X X</u>
1. 당기순이익	X X X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X X X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X X X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X X X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u>X X X</u>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X X X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X X X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u>X X X</u>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X X X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X X X	
IV. 현금의 증가(감소)		<u>X X X</u>
V. 기초의 현금		<u>X X X</u>
VI. 기말의 현금		<u>X X X</u>

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을 쉽게 요약하자면,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의 변동을 현금흐름으로 해석하여 작성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기말 대비 당기말의 매출채권이 증가하였다면, 자산의 증가를 위해 현금이 유출되었다고 가정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으로 표시한다. 자산의 취득에 따라 유형자산이 증가하였다면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해 현금이 유출된 것이므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포함시켜 표시한다. 반대로 매입채무가 증가하였다면, 부채의 증가를 통해 현금이 유입되었다고 가정한다. 만약, 당기 중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배당금 지급에 따른 현금 유출분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이처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가 및 감소 원인을 현금의 유입, 유출과 연계시키되, 이를 활용요인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현금흐름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부채 및 자본의 변동요인 중에는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나 대손상각비를 포함하는 각종 손상차손 등의 경우이며, 이와 같이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 및 가산하여 조정함으로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표시하도록 현금흐름표를 작성한다. 좁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을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현금흐름의 유입, 유출이 없는 손익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 등의 변동원인을 현금흐름과 연계하여 표시함으로써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다.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의 주된 사업, 즉 일반적으로 판매 및 구매와 생산활동의 결과 얻게 된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을 표시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의 증가와 감소를 통해 유출 또는 유입된 현금흐름을 나타낸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채와 자본의 증가 및 감소로 인해 유입 또는 유출된 현금흐름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는 차입금의 조달이나 상환, 증자, 감자, 배당금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로 재무정보이용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영업이익의 대안적 지표로서 현금흐름정보의 활용

발생주의로 처리된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와 달리, 현금흐름표는 기업이 창출하고 사용한 현금을 그 원천별로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현금창출능력, 유동성과 지급능력, 현금흐름의 사용용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현금흐름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3. 현금흐름표 사례- 분류〉

구 분	사례1	사례2	사례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손익계산서의 보완적 정보로서 기업의 계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현금흐름의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현금흐름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3에서 사례 1은 목적사업에서 경상적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신규투자를 실시하고 부채를 상환하거나 주주에게 자본금을 반환(배당 포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자로 인한 성장가능성과 재무안정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반면, 사례 3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차입이나 주주 자본납입을 통해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로 현금흐름에 매우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할 수 있다. 이처럼 현금흐름표는

우리는 지난 호에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기업간 회계처리 방법이나 회계처리를 위한 가정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반면,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상대적으로 기업간 높은 비교가능성을 제공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4. 현금흐름의 분석의 사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구 분	A사	B사		A사	B사
매출액	1,250	1,25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340	340
매출원가	865	752	당기 순이익	484	227
매출총이익	385	498	감가상각비	226	113
판매비와 관리비	168	168	유형자산처분이익	(370)	-
영업이익	217	33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500	-
금융원가	28	28	유형자산처분	500	-
기타수익	370		증가한 현금	840	340
기타비용	75	75			
당기순이익	484	227			
*감가상각비 정보	226	113			

기초, 기말의 자산, 부채의 수준은 동일하고,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는 130으로 가정, 법인세효과 무시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실현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의 결과 등), 감가상각비나 손상차손 등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은 대부분의 회계처리 결과를 제거하여 산출하며,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상대적으로 기업간 높은 비교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상기 표4의 단순화된 사례를 살펴보면, 감가상각비 및 유형자산의 처분상황 이외에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A사와 B사의 경우, 상이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지만,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발생시킨 감가상각비의 차이가 제거되고,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투자활동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현금흐름은 기업간 높은 비교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차이가 중요한 기업간의 비교목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기타(자본거래와 세무, 연결납세제도의 이해 등)



변석준 이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회계사
Tel. 02-6676-2490
sbyun@deloitte.com

목차	
1	총설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	손익귀속시기 및 자산의 취득가액
4	주요 익금항목에 대한 이해
5	주요 손금항목에 대한 이해
6	자산에 대한 평가 및 고정자산 감가상각
7	접대비와 기부금
8	퇴직급여총당금과 대손총당금
9	준비금, 지급이자
10	부당행위계산부인
11	법인세 계산, 신고 및 납부
12	기타(자본거래와 세무, 연결납세제도의 이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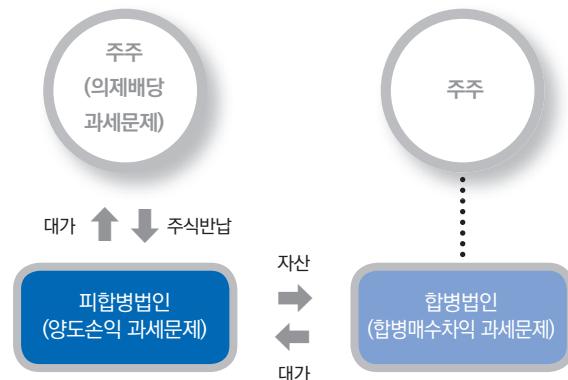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합병 및 분할 등의 자본거래와 관련된 세무와 연결납세제도’에서 대해서 살펴보겠다.

합병 및 분할의 경우 현물출자설과 인격합일설이 혼재되어 있던 기존 과세체계를 2010년 7월1일 부로 개정하여 현물출자설에 기초하여 합병 또는 분할거래를 자산의 양도거래로 보고 해당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연결납세제도는 법인단위로 과세하던 개별납세방식만을 인정해오다가 2010년부터 기업조직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연결소득을 산출한 후 연결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인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합병은 2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합병거래는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로 본다.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합병거래가 발생하면 피합병법인의 경우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자산양도손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주식을 반납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의제배당’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리고 합병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그 차액의 경우 ‘합병매수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의 경우 합병에 따른 과세문제를 살펴보겠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시가 5,000원(액면가액 1,000원)인 주식을 교부하였다.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6,000원(시가 9,000원), 부채는 3,000원이다.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갑이 100% 보유하고 있고 장부가액은 2,000원이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 5,000원에서 순자산장부가액 3,000원(=자산 6,000원 - 부채 3,000원)을 차감하면 2,000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갑의 경우에는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5,000원에서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2,000원을 차감한 3,000원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합병법인의 경우 순자산의 시가인 6,000원(자산의 시가 9,000원 - 부채 3,000원)에서 양도대가로 지급한 주식의 시가 5,000원을 차감한 1,000원의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한다.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역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서 합병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특례제도가 있다.

합병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필요 한 절차인 합병거래의 발생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피합병법인의 경우 적격합병은 피합병법인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손익을 0으로 한 경우를 말한다.

① 사업목적합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② 지분연속성: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가액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교부주식가액의 총합계액에 지배주주의 지분율(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주식을 지배주주에게 배정하고, 지배주주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할 것

③ 사업계속성: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경우 상기 요건 중 ① 사업목적합병과 ② 지분연속성요건(단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요건은 제외)만을 만족하면 합병시점에 의제배당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③사업계속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계속 여부는 합병법인의 의사결정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보유요건은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당해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합병법인은 상기 적격합병 요건을 구비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모든 유보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며,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역시 합병법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합병사업연도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계속성 요건 또는 지분연속성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적격합병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에서 이탈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이 당초 적격합병으로 처리함으로써 혜택을 받은 것을 취소하고 세액을 추징한다.

분할은 분할대가의 배분을 주주에게 하는지 분할법인에게 하는지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과세문제가 다른 형태로 발생한다.

분할이란 기존 회사의 사업부를 분리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의 경우도 분할법인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의 순자산을 다른 회사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합병과 동일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참고로 분할법인이 받은 대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를 인적분할이라고 하고, 분할법인이 가지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인적분할의 경우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할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경우에는 분할매수차익의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은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도받은 순자산의 시가와 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하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분할의 경우에도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 손익을 0으로 보고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① 사업목적분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과 같이 분할할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ㄱ)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일 것
- (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ㄷ)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② 지분연속성: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주식이고,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지분비율에 따라 그 주식을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게 분할 신설법인 등의 주식가액에 지배주주의 분할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의 주식을 배정)하고, 지배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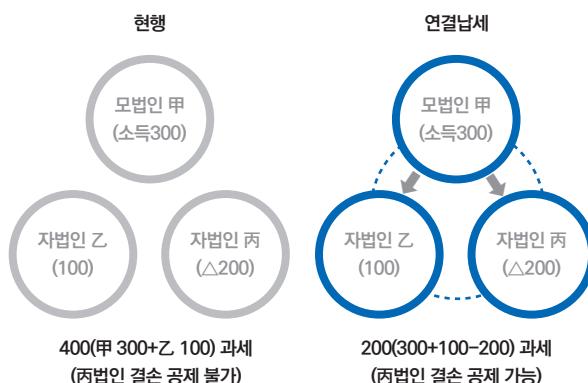
③ 사업계속성: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 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현행 개별납세제도에 의하면 모법인 갑의 2015사업연도 소득이 300, 자법인 을의 소득이 100, 자법인 병의 소득이 △200인 경우, 갑과 을의 소득 400(갑 300 + 을 100)에 대해서 과세되고, 병의 결손금 200은 갑 또는 을의 소득과 통산하

여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면 갑, 을 및 병의 소득을 통산하여 200(갑 300 + 을 100 - 병 200)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즉 병의 결손금 200을 갑과 을의 소득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조직(사업부 또는 자회사)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 경영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조세왜곡을 제거하고,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의 전부(5% 예외인정)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장)

최신법령정보

이 내용은 법제처 및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으로 세부자료는 법제처 (www.moleg.go.kr)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info.nts.go.kr)의 Web Site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26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의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제도로서 돌발적인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얼마간 근로자를 보호해 주려는 제도임. 또한, 제35조에서는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항을 두어 근로자가 근무한 지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 또는 예고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즉시 해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대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항을 보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와 함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의 다른 사유들과는 달리 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단지 월급근로자만을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금 받는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음.

「해고예고제도」의 내용은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적용제외사유에 관한 규정은 1953년 제정시부터 현행법까지 그 조문의 위치만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왔음.

이에 법 제35조제3호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규정을 형평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호).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월급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및 월급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그 기간의 합이 3개월 이상이 되면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호 신설).

2. 진행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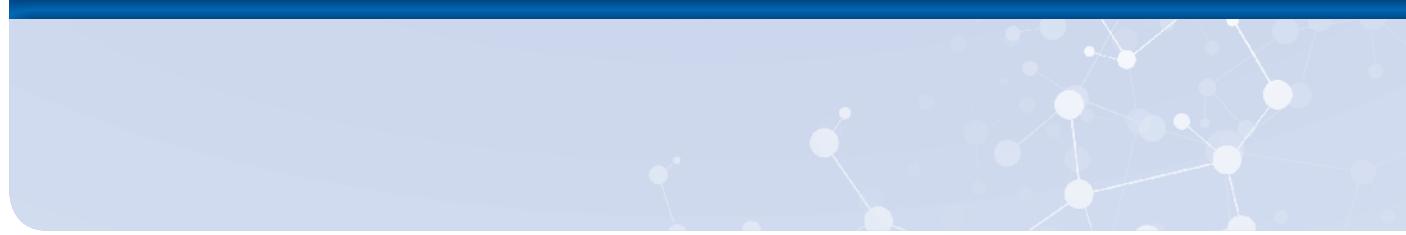
2015.4.28. 노웅래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33.2세, 여성 28.6세로 나타났음. 청년구직자들이 어학연수, 인턴 등으로 인해 대학 졸업이 늦어지고 고용시장에서 정규직은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신입사원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청년구직자의 초기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어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1항).

2. 진행경과

2015.4.14. 신경민의원 등 15인 발의

2015.4.15.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성차별 ·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1.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연령차별 금지와 관련된 개별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성차별금지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이 없어 성불평등 개선이 매우 더딘 상황임. 성차별금지에 대하여는 1999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었으나 2005년 통합적 차별금지법 추진과정에서 폐지되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개별 차별금지법들의 체계는 유지, 발전되어 온 데 비해 성차별금지에 관한 법만 폐지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별격차지수가 2006년 92위에서 2014년 117위로 떨어지는 등 성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측면이 있음. 이에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정신에 따라 성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을 새롭게 보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흩어져 있고, 성희롱의 정의가 협소하고 성희롱 발생 후 조사과정과 발생 확인 후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음. 관련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발생이 기업, 학교, 군대 등 장소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희롱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안은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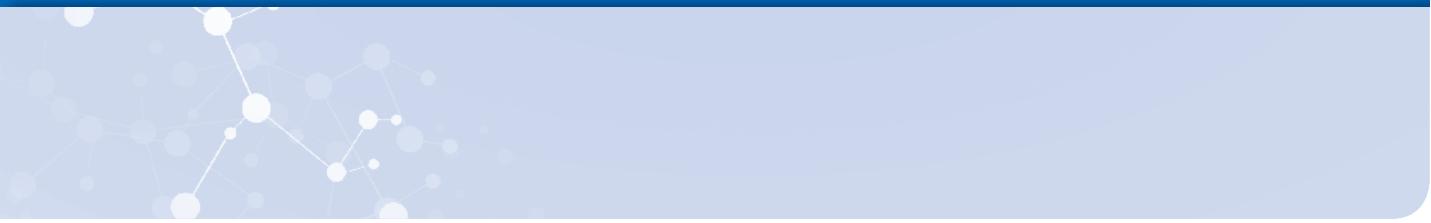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차별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함(안 제2조 제1호).

다. 성희롱이란 행위자나 피해자의 고용, 업무, 교육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및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2조 제2호).

라. 성차별·성희롱 금지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조).

- 마.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모집·채용, 근로조건 등, 임금, 승진·정년·퇴직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성희롱 예방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확대하고, 성희롱 발생 신고, 임시조치와 성희롱 확인 시의 조치를 구체화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 사.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안 제22조).
- 아.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함(안 제26조).
- 자.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함(안 제32조).
- 차.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신고 사실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3조).
- 카. 피해자 등에게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고 외에 불이익조치를 하였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3. 진행경과

2015.4.10. 유승희의원 등 45인 발의

2015.4.13.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2015.4.27.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이 노사협의회 운영 과정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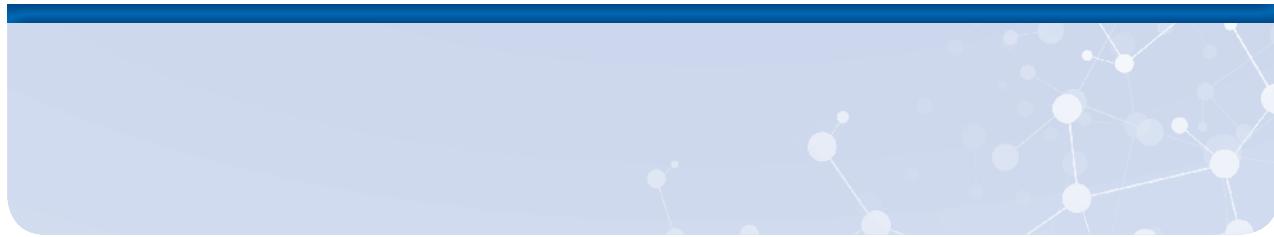
이에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대표자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2항 후단 신설).

2. 진행경과

2015.4.9. 임수경의원 등 10인 발의

2015.4.10.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국회의원 발의 법률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법인, 서면-2014-법인-21522, 2015.03.24)

[질의]

당사가 지급받는 관리운영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대수선비 및 막 교체비의 익금산입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에 계약해제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해당 수선비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서면-2014-법인-20785, 2015.03.20)

[질의]

대표이사의 급여체계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서면-2015-법인-22274, 2015.03.20)

[질의]

임원이 퇴직하면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이외에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였음. 퇴직한 임원은 직원이었으나, 이사회를 통해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상무'의 호칭으로 임원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가격제한폭 확대 ‘그레이 스완’ 되지 않으려면

연승 기자

서울경제신문



‘블랙 스완’이란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의미한다. 유럽인들은 1960년대 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검은색 백조(흑고니)가 처음 발견되기까지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고 믿었지만 이 발견으로 인해 ‘검은 백조’는 ‘진귀한 것’ 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게 됐다. 미국 월가에서 증권분석가로 활동했던 나심 니콜라스 탈레가 지난 2007년 월가의 허상을 피해친 ‘블랙 스완’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가 경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파생돼 ‘그레이 스완’, ‘화이트 스완’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그레이 스완’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악재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시장 상태를 ‘화이트 스완’은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때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을 각각 의미한다.

빠르면 오는 6월 국내 증시에서는 상하 가격제한폭이 30%까지 확대 실시된다. 가격제한폭 확대 실시를 앞두고 터진 ‘가짜 백수오’ 논란이 ‘그레이 스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격제한 폭이 확대되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주도주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급락할 경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논란’ 이후 주가가 27일 현재 반 토막이 난 상태며, 시가총액 순위도 논란 이전 9위에서 24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이 기간 내츄럴엔도텍의 시총은 7,966억원이 증발했다. 가격제한폭 30% 시행을 가정하면 같은 기간 주가는 83% 가량 폭락한 상태이며, 시총도 83% 급감한 상태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이 같은 악재가 또 터질 경우 주식시장의 혼돈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상승랠리를 이어가던 코스닥이 ‘가짜 백수오’라는 암초를 만나 휘청이고 있다. 지난 4월22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를 조사한 결과 내츄럴엔도텍에서 공급하는 백수오 원료에서 가짜 원료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내츄럴엔도텍은 하락가로 추락했으며 이날 코스닥은 장중 한때 44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회사 측은 소비자원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시가총액 10위 이내 기업의 연일 하락가로 코스닥은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이뿐 아니라 공매도 세력이 가격제한폭 확대를 악용하면 한 박지 늦게 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공매도 세력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동적변동성 완화장치에 더해 정적변동성 완화장치가 추가됐고, 하루 1회 발동 가능했던 서킷브레이커스도 3회(8%, 15%, 20%)로 늘리는 등 변동성 완화 장치들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90%에 달하는 코스닥 시장은 수급의 주체뿐 아니라 종목별 쏠림 현상도 매우 강해 가격제한폭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는 개인의 뒷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가격제한폭 이전에 경험한 ‘내츄럴엔도텍’ 사태를 ‘그레이 스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예상되는 리스크를 관리할 대책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년 간의 박스권에서 벗어난 코스피도 이제 막 신뢰를 회복한 코스닥도 ‘짧은 봄날’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릴 것이다. ③

최초의 통일제국 진나라의 승상, 이사(李斯)의 말로

김영수 고전연구가

통일제국 최초의 승상

중국 역사에서 이사(李斯)는 그 지명도가 아주 높은 인물이다. 그는 빈털털이 지식인에서 진시황을 도와 최초의 통일 제국을 이룩하고 끝내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재상이 된 말 그대로 인간 승리의 표본이었다. 그는 또 자신의 손으로 일군 통일 제국을 자신의 손으로 망쳐버린 역사의 죄인이었다. 그는 통일 제국의 문물과 제도를 자신의 손으로 구석구석 정비한 제국의 뛰어난 설계자였으나 결국은 저자거리에서 허리가 잘리는 형벌을 받고 처참하게 죽은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평민 출신의 별 볼일 없었던 지식인으로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의 재상이 되기까지, 휴가 나온 자식을 위한 잔치에 수천에 이르는 수레와 말이 몰릴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화려한 삶에서 삼족이 멸족당하는 처절한 최후까지, 이사의 인생유전은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이 때문에 이사의 영육과 부침은 2천 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런저런 평가를 날았다.

이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개괄해보면, 입신출세를 위해 노력했던 애심만만한 이사가 황제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얻고 난 다음 서서히 변질되고 급기야는 자신과 삼족 나아가서는 자신의 손으로 일군 제국을 망치는 모습을 보아낼 수 있다. 그 과정에는 최초의 통일 제국의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도 있었고, 최초의 황제 진시황의 죽음도 있었으며, 최초의 농민봉기로 평가받는 진승(陳勝)의 기의도 있었다. 이사의 삶은 그 자체로 역사였고 그런 만큼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뒤따랐다. 그런데, 이사의 행적을 두고 지난 2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품었던 의문 가운데 하나는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영리했던 그가 어

째서 저급하고 비열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조고에게 넘어가 자신의 손으로 세운 제국을 망쳤는가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이사의 행적을 놓고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도있는 역사적 성찰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이사의 탄식

사마천은 이사의 삶과 그 삶의 질적인 변화 과정을 〈이사열전〉에서 비교적 상세히 남겼는데, 기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흥미롭게 이사가 평생 다섯 번 탄식한 대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다섯 번의 탄식을 통해 이사의 인생관과 그것의 변모 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또 나아가서는 인생에 대한 이사의 성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지도층에는 이사와 같은 인간 유형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의 일그러진 행태에 너무도 너그럽다. 역사는 이사를 심판했지만 지금 우리 주변의 이사 아류들은 그 평가마저도 피해갈 태세다. 우리 모두가 이사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사의 첫 번째 탄식은 젊은 날 말단 관리 노릇을 할 때 변소에 사는 쥐와 곳간에 사는 쥐가 사람이나 동물을 보고 보인 대조적인 반응 때문이었다. 변소의 쥐는 사람이나 개가 접근하면 깜짝 깜짝 놀라고 두려워한 반면, 곳간에 사는 쥐는 사람이나 동물을 전혀 겁내지 않았다. 이에 이사는 “사람의 잘나고 못난 것도 쥐와 같으니,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에 달렸을 뿐이다”고 탄식했다. 이를 계기로 이사는 입신출세에 강렬한 욕망을 갖기에 이른다.

두 번째 탄식은 통일 제국의 진나라의 재상이 되어 막강한 권력과 부



지금 우리 지도층에는 이사와 같은 인간 유형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의 일그러진 형태에 너무도 너그럽다. 역사상 이사를 심판했지만 지금 우리 주변의 이사 아류들은 그 평가마저도 피해갈 태세다. 우리 모두가 이사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나왔다. 잠깐 언급한 대로 아들 이유가 휴가를 내서 집으로 오자 이사는 잔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관들은 물론 문무백관들이 모두 참석하여 축하를 빌었는데, 하객들이 끌고 온 수레와 말이 수천을 헤아릴 정도였다. 이에 이사는 자신의 부귀의 극도에 도달했다면서 “만물이 극에 이르면 쇠퇴하거늘, 내가 어디서 멈추어야 할지 난감하구나”며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부귀와 권력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종착점을 예상하고 있는 이사의 모습은 지식인의 전형적인 자기성찰의 모습이었다.

진시황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나름대로 자신의 미래를 성찰하고 있던 지식인 이사의 인생 항로를 급선회시킨 사건이었다. 조고의 회유를 뿐 리치지 못하고 무혈 쿠데타에 가담한 이사는 “아아!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나 홀로 죽을 수도 없고, 대체 어디에다 이 목숨을 맡길단 말인가!”라며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사의 세 번째 탄식이었다. 이 탄식은 권력과 부귀에 연연해하는 이사의 자기합리화에 다름 아니었다.

유서 조작으로 태자와 그 측근들을 해치고 어리석은 호해를 황제에 앉힌 조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호해는 완전히 조고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었고, 이사는 서서히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사는 호해에게 글과 말을 통해 조고의 문제점을 일이 지적하면서 조고가 장차 변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호해는 이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고에게 이 일을 알렸고, 조고는 이사의 아들이 반란군과 내통한 혐의가 있다며 이사를 모반으로 몰았다. 이사는 포박되어 감옥에 갇혔고, 이사는 어리석은 호해를 원망하며 네 번째 탄식을 내뱉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많이 늦었다.

이사의 마지막 탄식은 처형에 앞서 있었다.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사는 둘째 아들에게 “내 너와 함께 누령이를 데리고 고향 상채 동쪽 교외로 나가 예전처럼 토기 사냥이나 하려고 했는데 다 허사가 되었구나!”며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이사에 대한 평가

이사의 일생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리사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만 이사의 주관적 요구와 진시황의 객관적 필요성이 완전히 맞아떨어져 진시황을 보좌하면서 적지 않은 공을 세웠고, 그 대가로 큰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을 뿐이다. 하지만 객관적 필요성이 사라지고 이사의 개인적 욕망만 남은 상태에서 이사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이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 상관이 없었다. 조고와 손을 잡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을 뿐이다.

이사, 그는 변소간에 살면서 여기저기 눈치나 보는 그런 쥐새끼에서 곳간의 쥐새끼로 변신하는 데는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쥐새끼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어쩌면 변소간에 살면서 곡식을 먹는 그런 쥐새끼였는지 모른다. 보다 송고한 가치관은 뒷전으로 한 채, 인간의 잘 나고 못나고를 그가 처한 상황(물질 환경)으로만 재단하려한 저급한 인생관에 사로잡혀 오로지 사사로운 부귀와 영화만을 위해 평생을 눈치보며 살았던 서글픈 지식인 이사의 모습 위로 오늘날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우리 지식인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동시에 이사의 빼들어진 자기성찰이 한 개인은 물론 나라까지 망쳤다는 엄연한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진다.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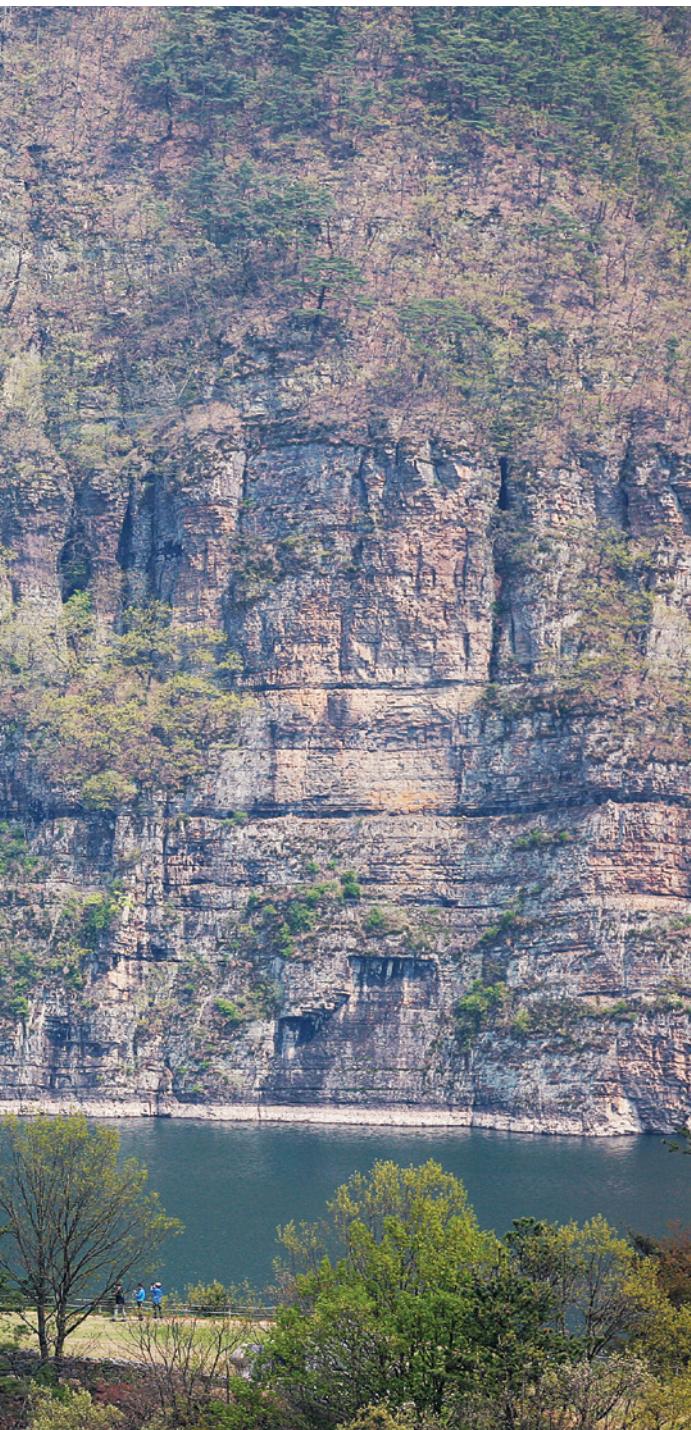
그 곳에 가고 싶다

30년 만에 만나는 적벽의 비경, 화순 적벽투어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과 천불천탑 운주사로 대표되는 돌의 고장 전남 화순. 2013년 10월 화순에는 돌이 빚어낸 아름다운 경관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30년 만에 개방된 화순적벽이다. 사람의 발자국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그곳에 오로지 자연만 남아 천혜의 비경이 그대로 남아 있다. 화순적벽과 함께 동복호 주변을 차례로 만나본다.

글·사진 | 문일식(여행전문칼럼니스트)





30년 만에 펼쳐지는 비경, 화순 적벽투어

화순적벽은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 보산리 · 장항리 일대에 7km에 걸쳐 있는 붉은 절벽이다. 노루목적벽, 보산적벽, 창랑적벽, 물염적벽을 아울러 화순적벽이라 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 절경은 이서면에 있는 노루목적벽을 꼽는다. 적벽투어는 화순적벽 가운데 노루목적벽과 함께 망향정이 세워진 보산적벽을 만나는 여정이다.

화순적벽은 오래 전부터 시인묵객이 찾던 곳이었고, 동복댐이 건설되기 전까지도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북적이던 곳이었다. 하지만 동복댐이 건설되면서 적벽의 일부가 물에 잠겼다. 게다가 주변 15개 마을도 물에 잠겼고, 광주광역시의 식수원이 되면서 수몰민에 한해 한시적으로 드나들 정도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됐다. 3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천혜의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 선경을 펼치고 있다.

화순적벽은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로 화순 동복으로 유배를 온 최산두가 깎아지를 듯한 절벽을 보고 중국의 적벽에 벼금 간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최산두가 적벽이라 이름을 붙인 후 호남을 대표하는 석천 임역령, 하서 김인후 등 내로라하는 선비들이 적벽을 찾아 시를 읊었다. 조선 후기 방랑시인 김삿갓도 적벽을 찾았다.

화순 금호리조트 주차장에서 출발해 이서면을 지나 화순적벽 초소에 이른다. 초소부터 화순적벽이 바라다 보이는 망향정까지는 4.8km. 동복호의 절벽을 따라 비포장도로는 구불구불 휘어지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한다. 버스가 이런 길도 다니나 싶을 정도로 아찔함을 느낄 때쯤 동복호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거북섬이 차창 너머 선명하다. 비록 차창으로 보는 풍경이지만 긴 목에 등갑을 지닌 거북이 모습 그대로다.

화순적벽의 첫 번째 포토존은 망향정이 있는 보산적벽과 노루목적벽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전망대다. 망향정에서 바





라보는 웅장한 화순적벽보다 망향정을 이고 있는 보산적벽과 노루목적벽의 조화가 훨씬 더 멋지다. 아쉽게도 5분이나 지났을까? 버스는 탐방객들을 싣고 망향정을 향해 분주하게 내려 간다. 갈지자로 된 가파른 길을 한참을 내려가야 망향정 입구에 닿는다. 노루목적벽은 용성산의 서쪽 사면의 깎아지를 듯 한 절벽이다. 동복댐 건설로 많이 잠겨있지만 지금도 웅장한 모습은 그대로다. 망향정에 앉아서 때론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보호선 앞에서 노루목적벽을 바라보는 사람의 발길과 시선은 오래도록 멈춰 섰다.

노루목적벽과 보산적벽은 아쉽게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는 11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만 개방한다. 하루 3회, 일 최대 384명만이 적벽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적벽투어는 화순 금호리조트 주차장에서 출발해 포토존과 망향정에서 적벽을 둘러 본 후 다시 주차장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화순 투어 홈페이지(tour.hwasun.go.kr)에 들어가 적벽투어에서 예약하면 되는데, 탐방 2주일 전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마감이 금방 끝나므로 서둘러야 한다.

적벽투어 후에 만나는 화순의 명소

화순적벽투어가 끝나면 화순군 북면, 이서면 일대로 둘러볼 곳이 제법 많다. 먼저 화순 금호리조트 주변에는 공룡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는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선산지가 있다. 1999년에 발견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48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는 육식공룡과 초식공룡의 발자국이 무려 1,800여개나 된다. 게다가 73개 이상의 보행렬을 형성하고 있어 화석산지 주변으로 난 데크를 따라 숨은 그림찾기 하듯 공룡발자국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선산지에는 전남 내륙 최초로 발견된 백악기의 공룡발자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수각류 즉 육식공룡의 보행렬이 이어진 곳이다. 육중한 초식공룡의 발자국은 찾기 쉽지만, 몸집이 비교적 작은 육식공룡의 발자국은 눈에 띠지 않는다.

4곳의 화순적벽 가운데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5km 남짓 떨어져 있는 물염적벽도 빼놓을 수 없다. 물염적벽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는 물염정이 세워져 있다. 정자 주변으로 벚나무가 에워싸고 있어 이른 봄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세상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정자로 난고 김병연이 화순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 자주 찾아 시를 읊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

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물연정 주변에 김삿갓 동상과 시비가 세워져 있다.

김삿갓도 반한 화순, 그리고 눈을 감은 곳, 김삿갓종명지

‘무등산이 높다더니 소나무가지 아래에 있고, 적벽 강이 깊다 더니 모래 위에 흐르는구나.’ 적벽을 다녀간 방랑시인 난고 김병연(김삿갓)은 화순적벽의 수려한 풍경에 넋을 잃었다. 난고 김병연은 화순의 절경에 반해 3번이나 찾았고, 오랜 방랑생활을 이곳 화순에서 마감하고 눈을 감았다. 아마도 적벽의 절경에 매료되어 더는 방랑하기가 싫었던 게 아닐까?

그가 눈을 감은 곳은 화순적벽에서 10km 남짓 떨어진 동복면 구암마을이다. 마을 내에는 난고 김병연이 눈을 감은 곳이라는 뜻의 ‘김삿갓종명지’가 자리 잡고 있다. 난고 김병연은 1863년 3월 57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이곳 사랑채에 머물렀다. 김삿갓종명지에는 그가 머물렀던 사랑채와, 안채, 사당 등이 복원되어 있다. 난고 김병연이 죽은 뒤 초분을 했던 초분 터도 마을 뒤편에 남아 있다. 마을 입구의 언덕처럼 솟아있는 봉우리에는 망미대가 있다. 우람한 편백나무 숲을 따라 5분도 채 안 돼 망미대에 이른다. 암벽으로 이뤄진 망미대와 그 위에 망미정을 세웠다. 망미대에서 내려다보는 구암마을의 너른 풍경과 동복 일대의 산세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구암마을에서 동복천을 건너면 연둔리 숲정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숲이 있어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다.

화순에서 즐기는 두부 먹거리

화순은 유난히 특색 있는 두부집들이 많다. 국보966 옛날두부(061-383-5118)는 담양군에 속해 있지만, 화순 금호리조트와 가까운 곳으로 국내산 콩을 이용해 두부를 직접 만드는 곳이다. 직접 만든 묵은지를 이용해 만드는 두부 김치찌개가 일품이다. 도곡면에 위치한 달맞이흑두부(061-375-8465)는 검은콩을 이용해 만든 흑두부를 낸다. 블랙푸드 중 하나로 성인병 예방이나 다이어트에도 좋은 음식이다. 가마솥에 장작불을 때 두부를 만들며,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두부전골, 돼지수육과 홍어가 어우러진 흑두부삼합도 일품이다. 적벽투어길에 잠시 들르는 이서면에는 시골빵집 ‘누룩꽃이핀다’가 있다. 누룩을 자연 발효시켜 우리밀, 국내산 팥, 유정란을 사용해 빵을 만든다. 누룩꽃빵, 오디머핀, 뽕잎쿠키 등 영양 가득한 빵과 과자를 만든다. 들어가는 원재료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010-2719-0951). 증자



찾.아.가.는. 길.

호남고속도로 옥과IC에서 내려 오산교차로에서 동복 방면 15번 국도로 우회전, 원리사거리에서 화순온천방면 백아로로 우회전, 서유리 공룡발 자국 화석산지를 지나면 바로 화순 금호리조트에 이른다.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이서면 방면으로 4km 이동 후 북면임곡리삼거리에서 동복방면으로 좌회전 후 1.6km 가다보면 길 건너편으로 물연정입구가 있다.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방면으로 가다 원리삼거리에서 동복방면 15번 국도로 우회전 후 동복면 소재지를 지나 3km쯤 직진하며 길 건너편으로 김삿갓종명지로 들어가는 구암마을 입구다.



나의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인가

조정화 라이프코치, 칼럼니스트

기업 임원이나 팀장을 일대일로 코칭하는 비즈니스코치들에 따르면, 의외로 가정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삶에 여유도 없고, 가족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고민이라는 것이다. 유능함과 권위의 베일 안에도 가족을 염려하고 행복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 문제로 고민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손꼽아 기다리고, ‘집에 더 잘해야지’ 수없이 결심해도 생활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다짐은 그 날 신은 양말과 함께 한 쪽에 던져지고, 몸에는 리모컨 누를 힘만 남아있을 뿐이다. 워킹맘들은 육아 및 가사로 집에 와서도 퇴근하지 못한다. ‘누구를 위한 삶인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질문을 애써 외면한다.

흔히들 일과 가정의 불균형을 시간 부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시간보다 ‘에너지 부족’의 문제에 가깝다. 아이들이 한 시간이라도 부모가 빨리 오길 바랄까. 같이 있는 동안에 온전히 재미있게 놀아주길 바랄까? (물론 둘 다 되면 가장 좋을 것이다)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고대했던 상사의 칭찬 한마디에 기운이 솟아나서 가족들에게 더 상냥하게 대하게 되지 않던가. 반대로 일찍 귀가해도 종일 잠만 잔다면 집에 있어도 마음까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감당할 자신의 에너지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는 인간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이다. 건강한 음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얻을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

지할 때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얻는다. 특히 가정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 충전소이다. 집을 떠올리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숨이 먼저 나오는 사람도 있다. 전자는 무의식 중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지만 후자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새어나간다.

나의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인가? 또 하나의 직장인가? 만일 또 다른 직장처럼 느껴진다면 가정에서 느끼는 의무가 과중하다는 신호이다. 혹은 관계에서 풀지 못한 매듭이 영키고 설켜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일 수도 있다. 가정을 편안한 쉼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 배우자로서 갖고 있는 역할과 의무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집에서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작은 것도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게 바꾸라는 것이다. 매주 막히는 길을뚫고 장거리 여행을 갔다면 근처 공원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온 가족 마트 총출동 대신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가족 간에 역할과 의무를 서로 강요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마땅하다고 여기는 의무도 상대에게는 납득할 수 없고 부담스럽기만 한 짐일 수 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는 다음과 같은 명대사가 나온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세상 천지에 아무런 이유도 구실도 없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에너지는 달리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달 5월, 주어진 대로 사랑하자. 한 해를 버틸 에너지가 급속 충전될 것이다. ☺